

민주주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 3주년 심포지엄

&

자본주의

2026. 6. 27(토) 오후 2시 |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민주주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 3주년 심포지엄

1부. 주제 발제

개회사: 권영숙(연구소 소장)

여는 발언: 손호철(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 | 권영숙(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사회학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불)가능성에 대하여

- 공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 이계수(건국대 법학대학원, 법학자)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명암 | 장대업(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부, 아시아사 연구자)

패널토론 및 청중 질의

닫는 발언: 정성진(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본주의

2부. 라운드테이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계급, 차별, 공정의 프레임"

1부 패널: 권영숙(좌장), 이계수, 장대업

정성용(공공운수 전국물류센터노조 지부장)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시민건강연구소)

2026. 6. 27(토) 오후 2시 |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행사 프로그램 안내

오후 2:00 개회 선언

민중의례

개회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 여는 발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1부. 주제 발제 (오후 2:20~오후 4:00)

좌장: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

/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사회학자)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불)가능성에 대하여 - 공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 이계수 (건국대 법학대학원, 법학자)

-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명암”

/ 장대업(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부, 아시아사 연구자)

패널 토론 및 청중 질의

- 닫는 발언 : “총체적 위기 국면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 연속 혁명의 관점” / 정성진(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휴식 (오후 4:00~오후 4:10)

2부. 라운드테이블 (오후 4:20~오후 5:30)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계급, 차별, 공정의 프레임”

좌장: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1부 패널: 권영숙(좌장), 이계수, 장대업
- 정성용(공공운수 전국물류센터노조 지부장)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김창엽(서울대 보건대학원, 시민건강연구소)

오후 5:40 폐회선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목차

- 여는 발언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1쪽
/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1부, 주제 발제

- 발제 1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 /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7쪽
--	----

- 발 제 2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불)가능성에 대하여 - 공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 이계수 (건국대 법대)	21쪽
--	-----

- 발 제 3 -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명암” / 장대업(서강대학교 글로벌한국학부, 아시아사 연구자)	35쪽
---	-----

- 닫는 발언-

“총체적 위기 국면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 연속혁명의 관점” / 정성진(경상국립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49쪽
---	-----

2부, 라운드 테이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계급, 차별, 공정의 프레임”

- 토 론 -

“쿠팡물류센터 현장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고민하기”

/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55쪽

“집 문제를 통해 본 불평등, 민주주의, 공정 프레임”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59쪽

“‘유혹하는’ 자본주의 의료체제의 모순과 위기”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63쪽

[여는 발언 opening speech]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정치학)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손호철입니다. 우선 우리 시대에 몇 되지 않는 ‘소금’인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창립 3주년 심포지엄에 ‘여는 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련·동구(소위 ‘현존사회주의’)가 몰락하자, 후쿠야마라는 정치학자가 인류의 역사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승리로 끝났다는 ‘역사의 종말’론을 펴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30여 년이 지난 현재, 세계는 극우 포퓰리즘의 폭발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현 시대는 민주주의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따른 경제 위기, 1대 99 사회라는 양극화의 위기, SNS와 유튜브의 폭발 속에 공론장의 붕괴와 가짜뉴스독재의 위기, 인공지능(AI)에 따른 노동과 인류종의 위기, 인류를 넘어 지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위기, 코로나19가 보여준 팬데믹 위기 등이 중첩된 유례없는 ‘복합위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부르는 정치체제가 자본주의 시대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 자유주의는 선택과 자유, 따라서 민주주의이고 사회주의는 계획경제, 선택의 박탈, 따라서 독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문득 22년 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참석했던 ‘신자유주의반대 세계지식인 대회’가 떠오릅니다. 한 참가자가 차베스에게 ‘민중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PD)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뜻이 민중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앞에 왜 민중이란 접두어가 또 필요합니까? 민중적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 democracy는 그리스어로 demos의 kratos의 합성어로 ‘다수 민중의 지배’라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민주주의의 원조인 그리스 시대에도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체제는 ‘폴리스(polis)’였고 democracy는 이의 타락된 형태로 ‘우민정치’를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사실 democracy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약 100년 정도) 않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민주주의, 정확히 이야기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과 충분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전개를 위해, 충분조건부터 논의해 봅시다.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은 ‘자유권’이라고 부르는 사상,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입니다. 세계정치학계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라고 부른 1980년대 세계민주화를 이론화하면서 정식화한 것이 ‘특정한 사상이나 정당을 금지하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제한적 정치적 민주주의, 제한적 자유민주주의에 불과합니다. 이 제는 공식을 바꿨지만, 보수적이지만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측정기관인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대만의 민주주의는 1등급이지만 대한민국은 1.5 등급입니다. 대만은 공산당을 합법화했지만,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통선거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정권이 보여주듯이, 보통선거권이 있다고 모두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선거권이 없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주목할 것은 근대 들어서도, ‘주류사회’는 민주주의를 보통선거권과 같은 것으로 인식해, 불온시하고 ‘빨갱이의 주장’으로 치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보통선거권=사회주의=‘무산자독재’로 이해한 것입니다. 보통선거권이 도입되면 쪽수가 많은 무산민중이 정치를 지배해 사회주의를 할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사회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보통선거권이 도입되면 선거에 의해 사회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혁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념비적 저술을 남긴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보통선거권에 반대해 자본가는 4표, 노동자는 1표를 행사하는 차등선거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나아가 자유주의의 역사는 ‘백인 유산자 남자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다름없고, 보통선거권과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동의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발달했습니다. 예란 테르보른의 역사적인 논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수백 년이 됐지만, ‘선진국’조차도 보통선거권, 따라서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1926년, 프랑스는 1946년, 노동자 힘이 강했던 독일은 1919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늦는 1965년(아프리카계 투표권 부여)에야 보통선거권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각입니다. 우선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엥겔스는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며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들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재산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현대대의제 국가의 선거자격이 그러하다.” 주목할 것은 엥겔스의 이어지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산의 차이를 정치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결코 본질적이지 않다. 거꾸로 그런 특징은 국가발전이 낮은 단계가 있을 때의 특징이다. 최고의 국가형태인 민주공화제는… 공식적으로는 더는 재산의 차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민주공화제에서 부는 자신의 권력을 간접적으로, 그러나 더욱더 확실하게 행사한다.” 그는 노동자와 여성에 대한 투표권 제한에 대해 “봐라.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의 도구이지 않느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이하게도’ 이는 자본주의가 ‘덜’ 발달했기 때문이며 보통선거권과 민주주의, 즉 ‘민주공화제가 자본주의의 최상의 정치적 외피’라고 주장합니다.

왜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다른 계급사회(전자본주의)와 달리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이며 그러면 서도 계급지배가 가능하다고 봤을까요? 마르크스 <자본 3권>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현실의 노동자가 자기 생활의 생산수단과 노동조건 점유자(possessor)이기도 한 모든 형태에서는 소유관계는 동시에 직접적인 지배종속의 관계로 나타나며, 직접적인 생산자는 부자유인으로 나타난다… 이런 조건에서는 명목적인 토지소유자를 위한 잉여노동은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서만 강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종속관계와 토지에 종속시키는 것-진정한 의미의 예속-이 필요하다” 이를 뒤집으면, 생산자가 생산수단과 노동조건 점유자가 아닌 경우(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자본주의)에는 잉여노동 수취에 경제외적 강요가 불필요하므로 신분적 예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릅니다. 쉽게 말해, 봉건사회에서는 노동과정과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농민이라 최종생산물 쌀이 농민 손에 있으니 생산 후 사후적으로 물리력으로 수탈해야 해서 신분적 예속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에서는 생산과정에서 잉여노동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취하니 정치적 예속이 불필요하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허용하더라도 수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허용해도 이는 공장문 앞에서 멈춥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선거권과 민주주의에 반대하던 자본주의가 1900년대 전반기에 들어 민주주의를 수용한 것은 왜일까요? 테르보른이 잘 지적했듯이, 우선 계급투쟁, 밑으로부터의 압력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현대자본주의의 ‘팽창성’과 ‘탄력성’입니다. 제국주의(식민지 수탈)를 통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물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축적체제’의 변화로 장시간 저임금의 ‘유혈의 테일러주의’로부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드주의’로 변화한 것입니다. 야경국가와 테일러주의는 노동자들의 궁핍화에 의한 ‘과소소비’로 인해 대공황을 가져왔고, 이는 한편으로는 뉴딜(이명박이 생각하듯이 단순한 토목공사의 ‘노가다 뉴딜’이 아니라 와그너법 등을 통해 노사협상 등을 제도화한 ‘사회적 뉴딜’)이라는 국가개입(‘국가독점자본주의’)과 ‘사회국가’(‘복지자본주의’)로의 변화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화, 조립라인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 상승에 임금 상승을 연계해 이를 통해 대량소비를 유도하는 포드주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자가용 타는 노동자’)들은 체제 내에 ‘통합’됐고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자본주의’로 변한 것입니다.

변증법에 따라, 시장의 실패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한 ‘국가’는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문제’로 변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며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결과 탈규제와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소련·동구가 망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AFTA, WTO체제),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혁명’(STR) 등으로 기본적으로 장치산업인 포드주의도 위기에 처하면서, 기술발전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드 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비정규직이 일상화됐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동안 봉합되었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갈등이 다시 본격화되어 ‘민주주의 과잉론’속에 ‘포퓰리즘적 권위주의’, ‘야금야금형(creeping) 권위주의’, ‘신파시즘’이라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나타났습니다.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부상과 함께 철강, 자동차산업

등 미국의 '산업벨트'였던 중북부를 '러스트벨트'로 추락시켰고 저학력 백인 노동자 등 '신자유주의의 패배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주의와 같은 극우포퐁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은 공론장의 붕괴와 정파적 가짜뉴스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속화시켜 민주주의의 원래의 뜻과 정반대로 '다수민중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상황'(야사 뭉크 책 제목, *People vs Democracy*)에 이르렀습니다. 금융세계화는 2008년 월스트리트발 세계금융위기를 가져왔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막대한 비용은 혈세라는 방식으로 '사회화'하고 다시 생겨난 이윤은 '사유화'하는 모순이 심화되며 자본주의는 점점 '비생산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흡혈귀 자본주의'의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가 보여주듯이 '포스트신자유주의·신중상주의'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약 백 년간 지속되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안한 공존'이 근본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둘의 공존을 가능하게 했던 자본주의의 팽창성과 탄력성이 위기에 처한데다가 이를 추동했던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약화되고 계급 등 사회적 힘의 관계가 역전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퐁리즘은 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대안세력('정통좌파'와 '제 3의 길'이라는 '좌파 신자유주의')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중적으로 외면당할 때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고 역전된 사회적 힘의 관계를 재역전시키는 것인데, 그 대안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좌파 포퐁리즘'인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기여자가 박근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국민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엘렌 우드라는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를 모두가 칭송하는 '보편적 선'으로 만든 '민주주의의 보편화' 뒤에는 민주주의를 사소한 것(단순히 선거의 문제)로 축소하는 '민주주의의 사소화(Trivialization)'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누가 공장과 작업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느냐는 '작업장 민주주의', '노동자 자주관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민주주의와 시민권이 공장 문 앞에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의 '공장전제정'을 산업민주주의, 임금노동자기금 등을 통해 민주화 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1960년대 페미니즘운동이 내건 구호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는 선거, 노조 같은 소위 '공적 영역'을 넘어서 가족 등 '사적 영역'과 일상성에도 적용됩니다. 젠더, 성소수자, 청소년 등과 관련된 '일상성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제관계의 민주화'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들 문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생산은 단순한 물질의 생산이 아니라 "생산의 사회적 조건의 생산"입니다. 생산을 위해서는 도로망 등 기간시설로부터 임금노동자들의 교육, 법제도, 화폐제도 등 생산의 사회적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경제'는 존재하지 않고 '자유방임 시장경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순수한 경제에 국가와 정치가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제 속에는 국가와 정치가 '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모든 자본주의는 '국가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피켓데로운동(연금생활자들의 도로점거운동 등)이 보여주듯이 공장이 아니더라도 생산의 사회적 조건에 타격을 가하면 자본주의에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민주주의 투쟁을 단순히 선거를 통해 국가를 점진적으로 장악하는 투쟁으로 인식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사고는 자본주의 국가를 중립적인 도구로 인식하는 '도구주의적 국가론'에 기초한 잘못이며, 자본주의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분쇄한다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좌파의 시각도 국가를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물(thing)으로 인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투쟁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고 국가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는 결국 '사회적 힘의 관계의 물질적 응집'입니다.

복합위기의 암울한 시대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민주주의 투쟁, 더 많은 '탈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없는 사회주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부

주제 발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노동의 결과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이다. 그러한 권리는 어떠한 계급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단지 한 사람의 노동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암묵적으로 불평등한 개인적 재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의 불평등한 생산 능력을 자연적 특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상 불평등의 권리이다. 권리는 본질상 동등한 척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불평등한 개인들(만약 그들이 불평등하지 않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아닐 것이다)이 동등한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그들을 동등한 척도에서 파악하는 한에서, 즉 어떤 특정한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한에서이다. 가령 여기서는 그들이 단지 노동자로서만 간주되고 그 이상의 것, 다른 모든 것은 일체 무시되고 도외시 되는 것이다. 더욱이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한 노동자는 결혼을 했지만 다른 노동자는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으며, 어떤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고 따라서 사회적 소비 자금을 동일하게 분배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실제로 더 많이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모든 결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리는 동등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평등해야 할 것이다." (칼 마르크스, <고타 강령 비판>)

"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짓밟는 일을 스스로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그것은 남의 물건을 취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며, 거기에서 이득을 보고, 남을 지배하고 그리하여 타인의 예속을 획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자유의 첫번째 기준은 남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을 때 자유롭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형성하겠는가? 이것이 (불랭빌리에의) 자유에 대한 첫번째 설명이다. 불랭빌리에에게 있어서 자유는 정확히 평등의 반대다. 그것은 차이와 지배, 전쟁, 여하튼 모든 권력 관계의 체계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다. 불평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표출되지 않는 자유는 추상적이고 무기력하고 허약한 자유일 뿐이다. 비록 언제 어디선가 그것(* 원초적 자유의 상태)이 존재한 적이 있더라도, 이 자연적 자유와 이 평등적인 자유, 이 자연법은 다음과 같은 역사 법칙, 즉 자유라는 것이 타인을 희생시켜 확보되는 어떤 사람의 자유를 의미할 때, 그리고 사회가 본질적인 불평등을 보장해 줄 때에만 자유가 힘이 있고 원기가 있으며 완전하다는 역사법칙을 결코 거스를 수 없다." (푸코, <사회는 방어되어야 한다>, pp. 186-187)

I.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

이론적으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전제(presuppose)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는 필수적으로 민주주의를 '요구'(require)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는 우발적(contingent)이며, 역사적이다. 동시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처음부터 전제되어 있으므로, 자본주의 사회관계 하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되돌아온다. 즉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필연적인 상부구조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우연적 사회관계다.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역사 속에서도 그랬다. 반대로 자본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자본주의 이후의 단계, 즉 사회주의 단계가 아닌 다음에야 자본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으며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원시 공산주의 제외).

2.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이런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할까? 그것은 자본주의의 고유한 계급 구조에서 발생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노동을 자본과 동등한 관계에서 교환되는 것으로 사고한다고 지적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르주아들은 노동의 담지자인 노동자가 신분제 봉건사회와 달리, 사회의 지배자인 부르주아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교환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자본가들의 '도덕'이나 '지식'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식'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들이 지불하는 임금과 교환한다. 이때 이 교환은 시장 논리, 즉 수요와 공급에 따른 '평등한,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교환 과정에 진입하는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와 동등한 인간으로 제시된다. 실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불평등 교환관계(임금)이지만, 시장의 수요-공급 논리에 따른 '동등한 교환관계'라는 환상을 생산해낸다. 즉 이같은 환상(이데올로기)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교환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왜냐하면, 그같은 '등가교환'이 없다면, 아예 노동/임금 교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따라서 이 교환관계에 있어서의 동등성에서 '보편적 인간'이라는 관념이 제기된다. 이 보편적 인간은 동등한 권리, 동등한 자유,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가진 '어떤 존재'로 상정된다.

이 존재의 정치적 투영이 자본주의하에서의 민주주의다. 즉,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이 의식적으로 원하거나 말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논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동등하다는 환상'은 실제 자본주의적 교환 관계는 불평등, 부자유하기 때문에 환상인 것이다. 마르크스가 '정치적 해방이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고 한 것은 이같은 '환상'을 실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환상을 배태한 실제 사회적 관계 및 그것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해소하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서 원론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자본가의 의도나 지배자의 의도, 심지어는 노동자의 저항과도 무관하게 그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그 자체의 모순에서 파

생되는 추상적(비현실적) 관계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생산과정은 불가피하게 '보편적 인간'(유적 인간)이라는 관념을 창출해내지만, 이 보편적 인간은 이 개념이 상정하고 있는 보편성을 결코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정치체제의 다양성(권위주의, 파시즘, 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관철되는 근본적 현상이다.

따라서 마치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가 '진자'(pendulum) 운동을 하며 실현되었다가 혹은 다시 후퇴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적이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비민주적이거나 하는 '변덕'에 의해서가, 또는 단순한 '내부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폐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¹⁾

3.

마르크스는 '임금노동과 자본'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자본과 임금노동을 전제로 하며, 임금 노동은 자본을 전제로 한다. 둘은 서로서로 제약하며, 서로를 산출해낸다… 그러므로 자본을 늘리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자 계급을 늘리는 것이다… 생산을 위해 쓰이는 자본인 생산 자본이 급속히 늘어날수록, 따라서 산업이 번창해질수록, 다시 말해 부르주아지가 부유해질수록, 사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자본가에게는 더욱더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며 노동자는 더욱더 비싼 값에 팔리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상태를 그럭저럭 살만하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은 생산 자본이 될 수 있는 대로 급속히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를 살만하게 해주는 것, 즉 생산 자본의 성장이란 '산 노동에 대한 축적된 노동의 힘(죽은 노동)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성장하는 것이다”.

생산적 자본의 성장, 즉 자본주의의 확장은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이처럼 자본주의 확장기에는 자본에 '저항'할 유인이 적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자본가들도 관대하다. 또는 노동운동은 쇠퇴한다(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과거에 '지체된' 성장으로 인한 지연된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 투쟁이거나, 혹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임금 가치의 하락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축소된다. 즉 반자본주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쟁으로 축소된다. 대표적으로 87년 노동자대투쟁). 반면에 민주주의는 확장/심화된다. 왜냐하면 이같은 사회적 관계의 확대와 그 실천에서 파생되는 '동등성'과 '보편성'의 관념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산적 자본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자체 모순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동등성과 보편성의 관념은 약화된다. 자본은 노동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며, 따라서 과거의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이념의 유제가 현재 자본이 약화된

1) 이와 관련 필자는 민주화를 '결정적인 순간(critical moment)에서의 '이행(transition)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과정(long-term political process)'의 전환(transformation)으로 파악해야한다고 본다. 민주화는 속도에서 점진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방향에서 전진과 후퇴, 진보와 퇴행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화는 탈민주화(de-democratization), 반민주화(anti-democratization), 재민주화(re-democratization)등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 정치적 궤적이다. 문제는 무엇이 민주주의를 이행, 전진, 퇴보하게 만드는가를 해명하는 것이다.

틈을 노리고 노자 관계 자체를 전복시킬 위험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른바 '비민주적' 경향이 강화된다. 단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수가 이같은 위험에 동조한다. 왜냐하면, "노동과 자본의 공동운명, 이해관계가 똑같지만, 임금노동자가 임금노동자인 한, 그의 운명은 자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4.

자본주의적 노자 관계(임노동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동등함이라는 의식과 이 의식에 기초하여 구성된 정치적 제도(민주주의) 사이에는 이중적인 모순 관계가 존재한다.

첫 번째 모순은 이 의식 자체가 허구적 관계(추상적 관계)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하에서 임노동은 '평등한' 교환 관계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해방이 계급의 해방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 가상의 평등성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 평등성이라는 관념 때문에 늘 '무력을 독점한' 국가를 통해 자본 자체를 전복할 위험이 있다는 피해망상을 자본가 계급에게 불어넣는다. 이른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나, 'red scare'와 같은 사회적 망상들은 모두 이같은 가상의 관계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정신병이지만, 그러나 이 정신병은 현실적 근거에 출발한다. 이같은 망상 때문에 자본가계급은 민주주의 자체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단지 '공산주의'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험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는 익살맞게도 노동자들은 민주주의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고, 자본가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또는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절대적 통제 하에 놓기 위해, 즉 민주주의를 비민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한다. 그래서 마치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둘 다 자본주의에 기여한다.

II. 근대 자본주의 정치의 비밀 - 화해 불가능성의 화해가능성

5.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르다. 이는 역사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성립과정을 보면, 혹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기원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별개의 것, 심지어 적대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의 전환, 즉 자유민주주의로 전화하는 정치과정이 있었다.

자유주의는 신분제적 권위주의와 선을 그으면서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국민국가의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했던 자본가계급 나아가 자본주의 발전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나아가 구체제의 몰락을 가져온 자본주의로의 '사회적 대전환'속에서 자유주의는 유일한 혹은 처음부터 헤게모니적 정치 이데올로기 및 세력이 아니라, 사회주의, 공화주의, 민족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정치이데올로기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Bottomore 1979; Therbone 1977). 나아가 자유주의는 그것이 물질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우월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서기도 했

다.

그렇다면 한때 민주주의를 배척했던 자유주의가 어떻게 하여 민주주의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자신의 것으로 전취해 갔는가? 이 모든 것은 에릭 홉스봄이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의 '이중 혁명'이라고 말한 장기 19세기 과정에 서구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때의 혁명은 노동계급의 혁명이 아니라 자본의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혁명이다. 이 역사적인 시기는 자본주의의 등장, 국민국가의 건설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구축을 통해서 '근대정치'를 주조한 시기이기도 하다. 근대적 거시 변동이 자본주의 출현과 발전, 국민국가의 건설, 그리고 정치체제로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3각 관계로 정립된 과정이다.

6.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려는 투쟁이었으며 민주주의는 신분제 정치질서에 대항하여 정치적 참여권의 확장을 위한 정치투쟁이었다. 결국 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분열 혹은 화해 불가능성을 의미한다.²⁾

고로 개념적으로, 기원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충돌과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동거가 가능해졌는가? 이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화해불가능성이 절합하는 역사적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인민주권'대신에 선거주권을, 다수 지배 대신 대의제를, 평등 대신 자유를 중심에 두는 자유민주주의로 전화하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이렇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로 완성되었다.

강조했듯이 이 절합은 우연적이면서, 즉 논리적 필연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역사적인 계기와 투쟁을 통해서 실체화되었다. 1789년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소유를 확립하려는 투쟁이자 이념이었고, 민주주의는 신분제 정치질서에 대항하여 정치적 참여권의 확장을 위한 정치투쟁을 위한 사상이었다. 시작부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 분열 되었으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의 분리과정(헤겔적인 시민사회와 국가의 대당)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의 재통합 과정이 일어났다- 정확히 말하면 '공공영역' 혹은 정치체의 경제로부터의 자율화 과정이 일어났다. 그람시적 의미의 정치사회가 혹은 맑스적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과연 자본주의로부터 '독립'하거나 '분리된 정치적 공간'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지속되었지만, 민주주의는 그런 정치적 자율의 공간을 의제화하기에 적당한 이념이었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에 걸맞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결합이었다. 그리하여 사적 소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은 자본주의 국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사적 소유의 자유를 민주주의개념이 표방하는 1인 1표의 정치적 시장에서의 권리와 자유에 등치시킴으로서 사적 소유의 자유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

2) 여기서 먼저 한가지 분명히 해두자. 여기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liberalism)'이다. 이는 기존의 한가지 한국에서의 특유한 용법으로부터 일단 자유주의의 역사성과 이념적 성격을 분명히 하자는 말이다. 즉 이 글에서 의미하는 자유주의는 한국의 보수 권위주의체제가 차용하여 헌법에서 명시하고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그 '자유민주주의'(즉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으로서의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치사적으로 구체제를 해체시키고 자유를 중심으로 사회질서를 새로이 재편하고 나아가 정치적 자유시장을 열고자 했던(혹은 구체제 엘리트와 권력의 분점을 요구했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문지영 2011; 박찬표 2008).

이리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과정, 즉 고전적 자유주의를 고수하되 자본주의내 타협적 정치기제로서 민주주의의 변용과정이 일어났다. 결국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내포된 '평등'을 '자유'와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전화하였다. 대표적으로 한때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비난하기도 한 J.S. 밀은 입장으로 바뀌 다수의 계급(즉 노동자)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대의제와 차등대표제를 지지하였다. 그가 다수 지배, 즉 인민지배를 피하기 위해서 대의제를 지지했다는 점을 주목하다. 19세기 영국에서 대의제는 민주주의가 아닌, 심지어 반민주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정치적 결사체 (정당) 역시 "party"라는 경멸조의 호칭으로 불리며 반민주적이라고 배격되었다. 민주주의는 오로지, 사적 사유의 자유를 가진 '시민' 개인들의 것이었다. 이 초기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그리스 시민의 민주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

민주주의가 대의제와 적대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대의제와 등치되면서 민주주의는 누가 인민이나, 혹은 인민지배는 어떻게 관철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수의 지배를 대리할까의 절차의 문제(modus procedenti)로 치환되었다(R Williams; J. Schumpeter, 1975) 이렇게 먼저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묘한 접합이 일어났고, 그 다음 자유주의를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불가능한 결합이 이뤄졌다. 자본주의 상부구조로서, 그리고 자본주의와만 유일 양립가능한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바로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capitalist democracy)다.

Ⅲ.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 자유(민주)주의

7.

한국의 노동배제의 민주화, 노동정치없는 민주주의 정치, 나아가 좌파정당없는 정당정치는 한국의 자유주의정치가 민주화이행후 정치시장에서 지속했던 배척, 배제 나아가 공모적 억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집권 시기 동안에 진보좌파와 노동계급의 정치적 통합보다는 보수 우익과의 정치적 동거, 나아가 권력분점체제를 택했다. 이는 민주화이행 직후부터 자유주의 정치의 두 분파중 김영삼 세력의 민자당과의 합당,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김대중과 대자본가 정몽준의 연합정치 시도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정치적 자유주의 세력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었다. 한국의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이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사회경제적 자유주의와 친연적이다. 이들은 발전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시장의 자유'로 경제적 민주화를 이해하였고, 탈규제등 '경제 자유화'를 경제민주화로 이해했다. 서유럽에서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화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로 귀결되었던 것과 동일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적 질서를 완성한 것은 바로 다른아닌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이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하나의 '민주화'로 이해하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 정치세력이었다.

그 점에서 한국의 자유주의세력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도입 주체가 된 것은 불가피했거나 외부적 조건의 압력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저항하지 않는, 나아가 이념적으로 심지어 친연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인 노동배제의 민주화,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은 한국적 자유주의(Korean liberalism)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 민주화 이행 이후 '장기적 민주화의 정치적 과정의 성격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노동계급없는 민주화의 경로를 밟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자유화)의 '이중전환'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양자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우익 보수주의라기보다는 한국의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87년 민주화 이행은 97년 경제적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분리된 '체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행과 경제적 이행은, 정치적 민주화이후 경제적 자유주의적 질서화로 완결되었다. 필자는 에릭 홉스봄이 산업혁명과 정치적 시민혁명을 자본에 의한 '이중혁명'이라고 규정한 것에 비춰, 이 정치과정을 민주화 정치이행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의 '이중전환'이라고 규정하였다 (Kweon, Young-Sook, 2008).

8.

한국의 민주화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제도시장으로의 안정적 복귀를 의미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전쟁 이전 식민지 해방 이후 보수 양당체제를 특징으로 했던 '48년 체제'를 복원한 것이다.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은 결국 아담 스미스보르스키의 말대로 자본주의/지배엘리트의 경제적 이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정치적 게임의 장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치권력 장악 가능성을 확보한다(A. Przeworski, 1988).

하지만 스미스보르스키의 게임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 스미스보르스키, 나아가 루쉬마이어 등(1996)은 민주화의 지속 혹은 공고화의 조건으로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주요세력인 노동계급의 참을성 혹은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든다. 노동계급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당장 링(polity) 밖으로 뛰쳐나가 계급투쟁의 전면전에 나서지 않도록 노동에 대한 정치경제적 통합을 하고/나아가 노동계급을 순치하기 위해 그들을 장내에서, 즉 제도정치권에서 대리 대표할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그 역할은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세력의 과제였다. 자유주의는 노동계급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며(단지 "부르주아없이 민주주의 없다-배링턴 무어-가 아니라 "노동없이 민주주의 없다"- 루쉬마이어 등-이라는 것), 그래서 노동과의 정치적 계급연합을 통해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보하였고, 이는 결국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regime)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루베르는 이를 '자유-노동 동맹(lib-lab coalition)'의 길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적 민주화의 유형이라고 규정하였다(Luebbert, 1991).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자유주의 세력은 노동계급을 대표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노동과의 정치적 동맹을 맺지도 않았다. 오히려 노동이 일부 나아가 점차 절대다수가 자유-노동동맹을 껴했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노동과의 동맹 대신, 한국의 지연된 민주화 속에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중간계급과 나아가 이들의 더욱 강한 '민주주의'의 개혁지향에 기초한, '자유-시민'동맹(lib-civic coalition)에 의해서 두 차례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나아가 이런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적 헤게모니에 기초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는 '리버럴 민주주의'로 전화하였다. 필자는 이 특정한 유형의 민주화의 장기적 정치과정을 두고 '노동계급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Democraization without the Working Class)로 개념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유-노동 동맹'이 부재한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경로는 비교사적으로 한국 '사례'가 갖는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동일성과 차이점).

9.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자유 앞에서 민주주의는 왜 무력했던가?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선언했다. 맞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 재벌 이재용의 법적 처벌과 관련하여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자의 발언이다. 민주주의 법질서와 경제적 자본주의의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분리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의 믿음이기도 하다. 하지만 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가? 만약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와 화해불가능성을 화해가능한 정치체제로 만들 때의 전제, 즉 평등과 자유의 조화는 어디에 있으며, 정치는 왜 경제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가? 노무현과 문재인의 발언이야말로 정치가 경제 앞에서 독립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적 소유의 자본주의적 자유 앞에서 무력하다는 증좌가 된다.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이후 당선된 대통령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은 '계엄/쿠데타'에서 비롯된 '헌정 수호', '민주주의 수호'를 기치로 등장했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글로벌 대자본으로 성장한 일부 IT 산업 및 금융자본과의 결탁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성장, 그리고 이 성장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치'의 목표로 간주되며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민주주의'라는 구호(정치 지형의 관점에서는 '민주대연합')는 거리낌없이 폐기될 수 있다. 즉 이런 점에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과 다르지 않다. 다만 글로벌 경제 국면이 다를 뿐이며, 손을 잡는 자본의 성격이 다를 뿐이다.

오히려 이재명 정권은 이제까지 한국에 등장했던 보수 및 자유주의 정권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게 노골적으로 '친자본주의적'이며, 기대고 있는 '자본'은 '금융자본'이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선언하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으로 '인공지능' 투자를 해야 하는 IT 자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처럼 대중의 저항이 최소화되는 민주적 체제의 자발적 자본주의 확장 기여야말로 가장 유리한 체제이다.

결국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사고는 시민사회와 국가를 분리한다. 국가를 중립자, 혹은 불가피한 리바이어던으로 인정하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로부터 분리를 통해서 정치가 가능한 장소로 호명된다. 이렇게 하여 리바이어던(국가)은 집단적 의지의 집행자가 되고, 민주주의는 인민주권을 반납하는 대신, 누가 인민을 대표 혹은 대리할 것인가와 누구를 인민의 대리자로 뽑을 것인가라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로 화해가능한 정치체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과연 현실은? 과연 민주주의는 경제로부터 자본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비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는 계속 정치 그 자체를 실종시킨다. 정치적 언어를 법어의 언어로 대체한다. 사회적인 것들의 목소리를 법적이고 제도적인 틀로 가둔다. 결국 정치의 부재와 실종은 법이 위치한 국가, 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화해가능한 정치체제가 맞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화해가능한 '계급적' 정치경제체제이다.

IV. 최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변화: 국가와 신자유주의

10.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는 아직 세계화라는 거시적 경향은 종료되거나 그 수명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에서도 관찰된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핵심 논리들(시장 자유주의, 탈규제, 자유방임)은 약화되었지만, '시장'에 대한 논리들, 즉 시장이 여전히 성장과 위기 탈출의 가장 결정적 공간이라는 관점은 약화되지 않고 있다. 대신 '탈규제, 민영화'의 자리를 대체하여 들어온 것이 국가 주도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의 중요성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자본주의인 '중국식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유럽은 이미 2024년에 전 이탈리아 총리이자 ECB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가 유럽 성장 리포트에 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 나아가 이에 부수되는 노동시장 정책 및 복지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한창이었던 세기말과 달리 지금 21세기에는 신자유주의에 대당으로 간주됐던 국민국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자본주의 국가' 자체의 성격 변화를 지적하고 개념화하는 시도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즉 자본주의 국가와 국가 자본주의의 차이, 자본주의 국가중 자유주의적 국가와 국가자본주의의 비교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50-60년대 발전이론이 부활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덩달아 종속이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의 이론이 대두되었던 당대와는 달리 지금은 일국적(발전모델은 자립경제 모델을 전제로 함)인 산업정책이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는 세계화 경향에 동조하는 대외 지향적 혹은 대외적 압력에 저항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특징이다.

결국 이런 선회는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일정한 수정이며,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에서 권위주의로의 회귀 혹은 '민주주의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요약하자면 현재의 추세는 일종의 '혼합적'(mixed)인 산업정책(발전 모델)이며 이것이 혼합적인 이유는 국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와 민간 자본(특히 사적 자본-사모펀드) 사이의 공조(governance)를 강조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와도 다른 점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계속에서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공조, 민간사기업들에 의한 공공영역의 포위가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취임하자마자 국가에 의한 인텔 주식 10% 매입 등 국유화의 증가는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과거 절대적인 가치로 칭송받던 시장이 현실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의 변화가 아니다. 국가자본주의는 정치적 자유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와 반드시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는 생산 관계를 위에서부터 조직하는 방식이며, 자유 경쟁에 맞서 기득권층을 정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헤르만 헬러가 1933년 《노이에 룬트샤우》에 발표한 논문 "권위주의적 자유주의(Autoritärer Liberalismus)"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독일을 위해 제시한 "권위주의적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환기해볼 수 있다. 이 개념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적 자유주의, 독일 의회민주주의, 그리고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1930년대 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주의는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권위주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중앙집권화하는 강력한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정치 체제를 넘나드는 독일 자본주의의 궤적은 여전히 국가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유형론 문헌에서 "조정된 시장 경제"라고 묘사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다(Negar Mansouri, 2026).

이와 관련, 헌터는 자본주의 국가를 유형적인 사회적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내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전체의 특정한 순간"이라고 주장한다(Hunter 2023, 254; 2021, 192).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는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의 분리라는 제도화된 환상에서 진화한 "역사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형태"이다. 이 주장의 요점은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이 이론화를 저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구는 특정한 자본주의 사회(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회)의 정치적 발현으로서의 국가의 이중적 움직임과, "경제적 필연성이나 필요성으로부터 자율적인"(주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이중적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Hunter 2023, 268).

"미국에서의 국가자본주의의 부상"이나 "자유 시장의 종말"과 같은 자극적인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의 경제적 행위자로서의 재부상에 주목하지만, 최근의 '신국가주의'는 과거 뉴딜 정책이나 케인즈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이전의 국가개입 방식과는 다르다. 신국가주의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의 틀 안에서 구체화되는데, 이 틀 안에서 국가의 역량과 자원은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역량 없이 사회 재생산 조건을 안정시키기 위해 동원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주의는 더욱 강화되었고, 현재는 선진 자본주의 핵심 국가(미국의 트럼프 경제 정책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전지구적인 국유화 물결- 예외적인 사례로 머물지 않고,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2026년 06월 15일 참조. <https://dem-labor.org/praxis/chart/6146>

알라미와 딕슨은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인 자유방임주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초래했으며, 따라서 정치적 목표에 부합하는 영토적 축적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유 경쟁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경제에서 한 지역의 국가 자본주의 부상은 다른 지역에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고, 결국 국가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강요한다. 그들은 이를 "국가 자본주의의 내재성"이라고 부른다(알라미와 딕슨, 2024, 17). 그들이 "국가 자본주의 3.0"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국가주의적 전환의 물결은 "시장 지배를 탈정치화하는 데 근본적으로 관련된 형태 변환적인 계급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 분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고도로 시장화되고 기업화되고 금융화된 형태의 국가 개입이다(ibid. at 31, 327).

11.

고로 영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본 신조, 즉 의제화된 '정치와 경제의 독립성'(또는 "분리된 통일성)에 기반한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 자체를 포함한 공적 도전에 맞서 사유재산 관계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와 지배질서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무리 '축적의 위기'를 겪고, '국면적 위기'를 겪어도, 글로벌 이윤율 하락으로 인한 여러 '체제 전환' 시도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국가 및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위기 그 자체는 자본주의를 폐기시키지 못한다.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주의를 만들었던 봉건제의 위기처럼, 새로운 계급적 전투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힘의 지형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 권영숙, 2014,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의 노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비판 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17. 「민주화 이행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집 여름호.
- _____, 2018. "촛불의 운동정치와 87년 체제의 '이중 전환'", 『경제와사회』, 2018년 봄호(통권 제117호)
- _____, 2019. "국가의 비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권리담론 (right talk)의 팽창과 법의 언어- 법의 부재(不在)와 편재(遍在)에 대한 일고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9 봄 정기학술대회 기조발제
- _____, 2025. "법과 정치, 그리고 공화국의 미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창립2주년 기조발제 (2025. 6. 14)
- _____, 2025.4.9. "2025년 국내정세 전망- 한반도 지정학과 지경학, 그리고 위기의 징후와 폭발들: 계엄단 핵국면의 의미와 탄핵후 한국 정치경제, 지배계급의 선택", <전망과실천>19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 2025.5.07. "헌정위기(constitutional crisis)는 왜,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망과실천> 8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_____, 2026.3.30. "Broken Empire - 제국은 어떻게 몰락하는가? 퇴위의 지정학과 세계체제의 전환", <전망과실천> 28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 2026.2.11. "2026년 국제정세전망(2) 막장의 세계, 그리고 위대한 세력 균형", <전망과실천> 27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김수진, 1999. "한국정치 균열구조의 전개와 담합정당 체제", 《역사비평》 49.
- 문지영, 2005.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민주화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 박상훈, 2006. "한국의 '87년체제' 민주화이후 한국정당체제의 구조적 변화", 《아세아연구》, 49-2
- 박찬표, 2008.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상: "민주주의 과잉"인가 "자유주의 결핍"인가, 《아세아연구》, 통권 134호.
- 서관모, 2017. "'사회체제'론은 좀더 발전되어야한다", 《마르크스주의》 14권 3호.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박세연 역, 어크로스 (원제: How Democracies Die).
- 슬라보예 지젝, 알랭 바디우, 다니엘 벤사이드, 장-뤽 낭시, 자크 랑시에르, 조르조 아감벤, 웬디 브라운, 2010.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김상운 양창열 홍철기 역, 난장
- 임현진 김병국, 1991. "노동의 좌절, 배반된 민주화, 국가 자본 노동관계의 한국적 현실", 계간 《사상》(겨울호)
- 자크 랑시에르, 2011(2005).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허경 옮김. 인간사랑.
- 최장집. 2006. "노동없는 민주주의로의 전환- 일본 사회당의 실패에 관한 한 해석", 《아세아연구》, Vol. 49, No.2
- 콜린 크라우치, 2008. 『포스트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 이한 옮김. 미지북스.
- Kweon, Young-Sook(2008), *Liberal Democracy without a Working Class?: Democratization, Coalition Politics, and the Labor Movement in South Korea, 1987-2006*. Columbia Univ. Diss.
- Alami, Ilias, and Adam D. Dixon. 2024. *The Spectre of State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T Evans, AJ Ayers, 2006. "In the service of power: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Citizenship Studies* Vol. 10, No. 3,
- Gourevitch, Peter A. 1993. "Democracy and Economic Policy: Elective Affinities and Circumstantial Conjunctions," *World Development* 21-8.
- Huber, Evelyn, Dietrich Rueschmeyer and John D. Stephens. 1997. "The Paradoxes of Contemporary

rary Democracy: Formal, Participatory, and Social Dimensions." *Comparative Politics*, 29(3).

Hunter, Rob, Rafael Khachaturian, and Eva Nanopoulos, eds. 2023. *Marxism and the Capitalist State: Towards a New Debate*. Palgrave Macmillan.

Huq, Aziz and Tom Ginsburg, 2018. How to Lose a Constitutional Democracy, <https://www.democratic-erosion.com/wp-content/uploads/2018/03/Huq-and-Ginsberg-2018.pdf>

Luebbert, Gregory M. 1987. "Social Foundations of Political Order in Interwar Europe." *World Politics*, 39-4. pp.449~478.

Mann, Michael. 1995. "Sources of Variation in Working-Class Movements in Twentieth Century Europe", *New Left Review* Vol.212.

Mansouri, Negar., 2026. "Capitalist State, State Capitalism, and the Current Conjuncture of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Law and Political Economy*, 6(1)

O'Donnell, Guillermo, 1992, "Transitions, Continuities, and Paradoxes", Scott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eds.,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p.17-56,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Przeworski, Adam, 2024. "Who decides what is democratic?", *Journal of Democracy*, July 2024, Vol 35-3

Rana, Aziz, 2025, "Constitutional Collapse", *New Left Review*, March 2025
<https://newleftreview.org/sidecar/posts/constitutional-collapse>

Przeworski, Adam. 1986. "Some Problems in the Study of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Slater, Dan, 2025, "The Authoritarian Origins of the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Volume36, Number2, April. pp. 118-129 <https://muse.jhu.edu/pub/1/article/954568>

Streeck, Wolfgang. 2011. "The Crises of Democratic Capitalism." *New Left Review*, 12.

Therborn, Goran. 1977. "The Rule of Capital and the Rise of Democracy", *New Left Review* No. 1 03:3-41.

Tilly, Charles, 1995, "Globalization Threatens Labor's Rights",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47, pp.1-23.

Thornhill, Chris, 2022. "Constitutionalism and Warfare". *Direito Publico*, vol.102, 343-366.

[발제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불)가능성에 대하여

- 공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이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민주주의?

1. 선관위 사태와 '입헌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선관위 사태 앞에서 민주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면 동 위원회는 '헌법기관'이므로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한다. 국민이 의사가 이 기관에 직접 '침투'할 수 없으며, 국회 입법권을 통한 제도 재설계에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 왜 그런가 물으면 그게 입헌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또한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만들어 놓았으므로, 그렇다는 것이다. 어떤 제도 혹은 기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국민/민중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이런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데 이것을 공법학에서는 입헌민주주의라고 정당화한다. 즉,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자 지배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가 아니고 인권 혹은 자유의 보장이라는 실체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이고, 민주주의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그와 같이 설계해 놓더라도, 혹은 사법행정(司法行政)에 대한 민중참여/통제가 없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법원을 비민주적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권 보장이라는 (입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구를 민주적 기관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포획으로 평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원래 자유주의와는 별개의 원리이며, 양자는 용이하게 결합되지 않는다. 또한 양자의 안이한 결합은 위험하기도 하다.

부르주아 계급은 자본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자신만의 헌법개념을 구축하려고 하지만(Idealbegriff der Verfassung, 가령 방금 언급한 입헌민주주의의 헌법개념), 프랑스 혁명 이래 근대 자본주의 하에서 헌법이란 하나의 잠정타협(modus vivendi) (문서)일 뿐이다.

칼 슈미트는 헌법개념을 4개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설명한다. 그것이 절대적 헌법개념, 상대적

헌법개념, 실정적 헌법개념, 헌법의 이상적 개념이다. 먼저 실정적 헌법개념(Der positive Verfassungsbegriff)이다. 그는 이것을 정치적 통일체의 모습과 형식에 관한 전체결단으로서 의 헌법이라고 정의내린다. 이 결단을 내리는 자가 헌법제정권력자이다. 그런데 군주가 사라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결단은 (계급간 및 계급 내 분파간) 타협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정적 헌법은 결국 (잠정적) 타협을 통해 내려진 정치적 통일체의 모습(법치국가)과 형식(민주주의)에 관한 전국민적 결정이다.

이 결정이 잠정적인 이상, 이후 벌어지는 일은 실정헌법을 둘러싼 밀고당기기의 투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타협에 참가한 각 주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헌법의 이상적 개념’ (Idealbegriff der Verfassung)을 두고 대립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부르주아적 자유의 헌법적 보장’이 헌법의 이상적 개념이라고 하고,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평등의 실질적 실현이 헌법의 이상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니어도 그것을 헌법전에 집어넣는다. 가령 바이마르 헌법 제149조 제3항은 “대학의 신학부는 이를 존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것은 헌법(Verfassung)이 아니라 헌법률(Verfassungsgesetz)에 불과하다. 슈미트는 이것을 상대적 헌법개념이라고 하여 절대적 헌법개념과 구별한다.

그 타협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이며, 양자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형식으로 접합되어 있다. 다만, 그 접합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우연적인 것이다. 즉, 근대 자본주의 헌법에는 법의 지배,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평등과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시, 그리고 인민주권 등의 사상으로 구성되는 민주주의적 전통이 우연하게 역사적으로 절합(a contingent historical articulation) 되어 있다.⁴⁾ 양자의 절합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이 하나의 잠정타협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자체가 19세기의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상황의 우연성에 기인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자유민주주의 내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⁵⁾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liberalism과 democracy라는 상이한 원리의 복합체인 이상 그 내부에는 심각한 균열이 포함되어 있다. 슈미트는 이 개념을 절단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원리의 이질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논자도, 민주주의로부터 독립한 자유주의 원리를 옹호하는 논자도 모두 슈미트를 언급하면서,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반박을 시도한다. 상탈 무페는 주로 전자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양자의 관계를 절합(節合, articulation)의 관점에서 설명한다.⁶⁾

한편, 이 글에서 나는 자유민주주의의 두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자유주의를 자본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식, 개념화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만, 주

4) 상탈 무페, 이보경 옮김, 『정치적인 것의 귀환』, 후마니타스, 2007, 15-16쪽 참조. 이 책의 원제목은 다음과 같다. Chantal Mouffe, *The Return of the Political*, Verso, 1993.

5) 그 투쟁의 한 양상이 헌법해석투쟁이다. 국순옥은 헌법해석투쟁을 일반적 추상적 규범명제인 헌법상의 특정조항을 놓고 대립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급이 자신의 의사를 국가의 공적 의사로 관철시키기 위하여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일종의 진지전으로 이해한다. 국순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 『민주법학』, 제6호, 12-24쪽.

6) articulation은 접합으로도 번역된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2개의 다른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 연결의 형태이다. 그러나 그 연결은 항상 비필연적이고, 비결정적이며, 비절대적이며 비본질적인 것이다. 87년 민주화 운동을 자유화 운동으로 ‘평가’하는 나의 입장도 무페의 견해에 가깝다.

류 경제학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서 벌이는 영리 활동이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체제가 곧 자본주의라 여긴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부를 계속 축적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술이 진보하며 국가가 번창한다. 고등학교 정치경제 교과서나 대학교 경제학 개론이 설파하는 이런 이상화된 시장경제의 모습이 일상어에서 ‘자본주의’가 뜻하는 바다.⁷⁾

숨페터는 자본주의의 이 자유주의적 색채를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묘사했다. 그것은 봉건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주체가 자본을 내부에서부터 혁신하는, 즉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표현되었다.⁸⁾ 최근의 위기 국면에서 자본주의의 혁신을 주장하는, 이른바 ‘새로운 자본주의론’도 넓게 보면 숨페터의 논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자본주의론자들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기업의 목적과 사명의 쇄신에 주안점을 두는 입장들, ② 국가·기업·시민에게 응분의 (의식) 변혁을 압박하는 입장들, ③ 제도의 대담한 변혁을 설파하는 입장들이 그것이다.

①번 입장에 속하는 논자에는 기업을 변혁의 중심에 놓고, 자본주의를 안에서부터 혁신할 것을 주장하는 리베카 헨더슨,⁹⁾ 사회적 자본주의를 설파하는 제러미 리프킨,¹⁰⁾ ‘협동조합’이라는 오래된 유산이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가장 혁신적인 대안임을 주장하는 네이션 슈나이더¹¹⁾ 등이 있다.

②번 입장에 속하는 논자로는 윤리적인 자본주의를 찾아나서는, 구체적으로 윤리적인 집단(국가·기업·가족·세계)의 필요성, 포괄적인 사회, 포괄적인 정치의 중요성으로 돌아감을 주장하는 폴 콜리어,¹²⁾ 국가·시장·공동체라는 3자의 균형을 회복하고, 진행 중인 사회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라구람 라잔,¹³⁾ 1971년에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밀접한 관계를 묘사한 이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다듬어 온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¹⁴⁾ 도넛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¹⁵⁾ 등이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론의 세 번째 흐름에서는(③), 대담한 제도개혁을 설파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기존의 제도 - 특히 1인1표의 민주주의, 절대적인 사유제도 - 를 대담하게 변혁해야 한다고 논하는 에릭 포즈너/글렌 웨일,¹⁶⁾ 책 제목 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시장원리를 수정하여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의 시행을 주된 골자로 주장하는 브렛 킹/리처드 페티¹⁷⁾ 등을 주목할 만하다.¹⁸⁾

7) 장석준, “자본주의를 넘어”, 황해문화 통권 120호, 2023, 154-155쪽.

8) 요제프 숨페터, 이종인 옮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북길드, 2016, 126쪽.

9) 리베카 헨더슨, 임상훈 옮김, 자본주의 대전환 - 하버드 ESG 경영 수업, 어크로스, 2021.

10) 제러미 리프킨, 안진환 옮김, 글로벌 그린 뉴딜 -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 그리고 지구 생명체를 구하기 위한 대담한 경제 계획, 민음사, 2020.

11) 네이션 슈나이더, 김재우/이재민/한동승/허문경 옮김, 모두에게 모든, - AI 플랫폼 경제를 향한 새로운 도전, 기억(기), 2026.

12) 폴 콜리어, 김홍식 옮김, 자본주의의 미래 - 새로운 불안에 맞서다, 까치, 2020.

13) Raghuram G. Rajan, The Third Pillar, Harper Collins Publishers, 2020.

14) Klaus Schwab/Peter Vanham, Stakeholder Capitalism - A Global Economy that Works for Progress, People and Planet, Wiley, 2021.

15) 케이트 레이워스, 홍기빈 옮김, 도넛 경제학 - 폴 새뮤얼슨의 20세기 경제학을 박물관으로 보내버린 21세기 경제학 교과서, 학교재, 2018.

16) 에릭 포즈너/글렌 웨일, 박기영/하상웅 옮김, 래디컬 마켓 -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부키, 2019.

17) Brett King/Richard Petty, The Rise of Technosocialism - How Inequality, AI and Climate will Usher in a New World, Marshall Cavendish International, 2021.

18) 이상의 요약은 다음 문헌을 정리한 것임. 小峯敦, “「新しい資本主義論」の勃興 - その構造変化、環境負荷、「脱資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논의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불)가능성 논의로 치환해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자유주의적 **전통**의 권력분립원리,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적 **전통**의 사회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공법해석의 국면에서 어떻게 상호 투쟁하며 절합하고 있는지, 혹은 나아가 어떠한 절합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필자는 여기서 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 단정하지 않고 ‘전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령 권력분립원리, 법치국가원리가 자유주의적 전통 위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항상, 오로지’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다. 권력분립원리도 얼마든지 민주주의적 전통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민주주의적 전통이 경합하는 영역이다. 가령 사회국가- 급부행정의 예를 생각해보자. 관료주의 권력, 관료제 권력과 ‘관료 권력’은 다르므로, 독단적인 관료주의 권력을 견제하려면 사회국가에 법치국가적 보장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 반면, 관료 권력은 국가의 ‘정당한 일’과 연결되므로 사회의 위임을 받아 관료 권력이 시장과 자본을 규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회국가와 민주주의의 절합이 중요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쟁점을 살펴보자.

2. 공법의 기본원리 - 의의, 근거, 원리 상호 간의 투쟁과 절합

권력분리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를 흔히 행정법의 기본원리라고 한다.¹⁹⁾ 그런데 우리 행정법학 혹은 공법학에서는 이들 원리 상호 간의 투쟁과 절합 문제에 무관심한채, 앞서 말한 입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원리들을 고찰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원리가 민주주의원리를 압도하는 방향으로 법해석을 전개한다. 이것은 독일 공법학의 주류적 입장이기도 하다.

한국헌법과 달리 독일 헌법은 위의 원리들 - 특히 사회국가, 법치국가 - 의 헌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또한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각 주의 합헌적 질서는 기본법이 담고 있는 공화적이며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에 상응하여야 한다.” 사회국가를 지칭하는 “사회적”이라는 형용사는 제정사의 측면에서 보면 헤르만 헬러의 사회적 법치국가 개념을 수용하려고 한 사회민주당 출신 카를로 슈미트(Carlo Schmid)의 제안에 의해 기본법에 들어온 것이지만, 경제생활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둔 바이마르 헌법과 달리 극히 소략하면서도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곧바로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벌어졌다.²⁰⁾ 논쟁을 단순히 설명하면, 사회국가를 가운데 두고 **민주주의적 해석모델**(좌파)과 **법치국가적 해석모델**(우파)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²¹⁾

예컨대 전후 보수파 공법학의 대표자였던 포르스토프는 기본법상의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국가 원리 간의 상호 공존 구조를 법치국가원리를 우선 시키는 결단 쪽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뒤에서 보게 될 헤르만 헬러의) 사회적 법치국가 개념을 법치국가와 사회국가로 분해한 뒤, 법치국가가 사회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주장함으로써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발전을 저지

本主義論」を参照に”, 2022, 20-27쪽. 출처: https://www.econ.ryukoku.ac.jp/about/activity/discussion_paper.html

19) 프랑스 행정법학자 앙드레 드미셸은 국가의 단일성, 권력분립, 국가기능의 구별 및 법의 이원성을 4개의 기본원리로 둔다. André Demichel, *Le Droit Administratif - essai de réflexion théorique*, Librairie générale de droit et de jurisprudence, 1978, 33-69쪽.

20) Ekkehart Stein, *Staatsrecht*, 171쪽. 국순옥, “본 기본법과 사회국가”,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아카넷, 2015, 285쪽.

21) 국순옥, 위의 논문, 287쪽 이하.

하려고 했다.²²⁾ 포르스토프는 “법치국가와 사회국가는 헌법적 차원에서 하나로 융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²³⁾ 그는 사회국가원리를 탈정치화시켜 사회국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행정에 넘겨버리므로 공동결정권이나 독점(카르텔)금지와 같은 내용을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도출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²⁴⁾ 이 해석에 따르면 신생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사회국가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껏해야 “규모가 커진 연금금고”(überdimensionierte Pensionskasse)에 불과하게 된다.²⁵⁾ 포르스토프와는 결이 다르지만, 에른스트 루돌프 후버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사회국가적 전환을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용인하지만 사회국가의 민주적 효과는 철저히 저지하려고 했다. 그는 사회국가원리를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민주화라는 방향으로 확대해석하는 그 어떠한 견해도 결단코 거부하였다.²⁶⁾

사회국가에 대한 포르스토프의 독자적 견해는 외견상 국법학자 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전후 독일의 이론과 실무를 지배했다. ‘사회국가는 개별 사회정책을 수정·보완할 수는 있지만, 결코 현재의 경제적 권력관계를 개편하는 원리가 되지는 못한다.’²⁷⁾ 사회국가원리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실무에서도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²⁸⁾ 반면, 독일 공법학의 주류적 견해는 포르스토프 같은 보수파 이론가의 논지에 따라, 의회를 구속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하위원리로 다채롭게 무장한 법치국가원리를 모든 원리의 상위에 놓인, 공법해석의 중심으로 대우해 왔다.

왜 그랬을까? 사회국가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헌법 체계적 위상도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주류적 해석은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가 공법학에서 규범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법해석 투쟁**에서 피지배계급의 헌법학-행정법학이 충분히 승리하거나 개진되지 못했기 까닭이다. 또한 주류적 해석이 실무와 법제도를 통해 물질적으로 구체화 되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기본원리를 대할 때에는 어떠한 원리가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 행정법학이 기본원리 중에서도 유독 (주관적-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를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행정법 해석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독일에서의 법치국가-사회국가 이해는 한국 공법학의 주류적 견해도 자리 잡았다).

II. 권력분립원리, 법치국가원리

칼 슈미트는 1923년에 출간한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분석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의 구별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 분석 틀을 사용하여 그의 <헌법론>을 썼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별은 **부르주아적 법치국가** 헌법상의 이원적 구조, 즉 법치국가적 구성부분과 정치적 구성부분의 구별로 부연된다. 슈미트는, 양 원리의 구별을 제창한 것은 자신의 학문적 공헌임을 분명히 하면서,²⁹⁾ 그 구별을

22) Ekkehart Stein, *Staatsrecht*, 172쪽.

23) Ernst Forsthoff, “Begriff und Wesen des sozialen Rechtsstaates”, 49쪽.

24) Ernst Forsthoff, 위의 논문, 47쪽.

25) Ingeborg Maus, *Bürgerliche Rechtstheorie und Faschismus*, 73쪽.

26) 국순옥, 위의 논문, 308, 315쪽.

27) John Philipp Thurn, *Welcher Sozialstaat? - Ideologie und Wissenschaftsverständnis in den Debatten der bundesdeutschen Staatsrechtslehre 1949-1990*, Mohr Siebeck, 2013, 85, 444쪽.

28) John Philipp Thurn, 위의 책, 2-3쪽.

소홀히 하는 논자를 비판하기도 했다.³⁰⁾ 또한 권력분립원리와 법치국가원리는 자유주의이념에 속함을 분명히 했다. 슈미트 『헌법학』 제15장의 제목은 “권력의 구분(이른바 분리)”인데, 그는 이 제15장을 제2부 법치국가적 구성부분에 배치하였다.³¹⁾

1. 권력분립원리

행정법의 기본원리 중에서도 먼저 설명해야 하는 것은 권력분립원리, 법치국가원리이다. 권력분립이 없으면 행정법도 성립할 수 없다. 실제로 권력을 나눈다는 생각은 자본주의 소유권 이론의 태두라 할 수 있는 로크에서부터 출발하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제도화하였다. 또한 사람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의 변화는 전(前) 자본주의적 지배가 자본주의적 지배로 이행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권력분립원리는 행정법의 생성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리이다. 행정이 입법, 사법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 행정법도 생성·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다만,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에 각각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행정)법의 역할 혹은 행정법 내 개별 제도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영국의 공법학자(헌법학자)인 다이시는 ‘영국에는 프랑스적 의미의 행정법(공권력의 우위를 인정한 행정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³²⁾ 그는 프랑스 행정법은 영국인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관념, 즉 입법, 행정, 사법은 각각 타 부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분립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관념은 행정활동에 대한 일반법원의 통제를 차단하는 프랑스 행정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반면 영국은 프랑스식으로 권력분립원리를 이해하지는 않으므로 영국에 프랑스류의 대륙형 행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좀 길지만 그의 주장을 인용해 보자.

“영국의 법률 용어에는 *droit administratif*라는 말에 적절히 대응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한 번역어에 해당할 행정법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법관이나 변호사들에게 생소하며, 자세한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우리말에 *droit administratif* 개념에 상응하는 만족할 만한 대체어가 없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명칭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대상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³³⁾

“누구라도 프랑스의 *droit administratif*, 특히 그것의 적용영역을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행정법이 오늘날의 영국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두 개의 주요한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금방 알아챌 수 있다. (...) 두 번째 관념은 소위 ‘권력분립’(*séparation des pouvoirs*)을 유지하는 것의 불가피성이다.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각 다른 권력에 개입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 지

29)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201쪽.

30) Carl Schmitt, GLP, 30쪽.

31)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182-199쪽.

32) 다이시의 주장의 당부(當否)를 떠나 실제로 영국에서 행정법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영국 행정법은 1950년대부터 대학교육과 실무 모두에서 비로소 독자의 법분야로 발전했다고 한다. Erk Volkmar Heyen(Hrsg.), *Geschichte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Europa - Stand und Probleme der Forschung*, 1982, 55, 60-61쪽(J. F. Garner의 영국집필 부분).

33) A. V. Dicey,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constitution*, Eighth Edition, 1915, 326쪽; 알버트 다이시, 안경환/김종철 공역, 헌법학입문, 경세원 1993, 222-223쪽. 본문의 인용은 한국어역을 토대로, 원서 및 독일어번역본(*Einführung in das Studium des Verfassungsrechts*, Nomos, 2002)을 참고하여 필자가 대폭 수정한 것이다. 이하 인용은 ‘326/222-223쪽’ 형식으로 한다. 다이시의 원저는 편집본이 여럿 있으나 인용은 그가 생전에 마지막 간행한 제8판을 따랐다.

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 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권력분립은 쉽게 우리를 홀릴 수 있다. 프랑스 정치인이나 법률가들이 이 말을 내뱉으면, 그것은 영국에서 말하는 ‘법관의 독립’ 혹은 이와 유사한 표현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 프랑스의 역사, 프랑스의 입법 그리고 프랑스 제(諸) 법원의 판결들에 의해 해석되는 그런 권력분립이란 일반법원의 법관은 아무 이유 없이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따라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 또한 다른 한편으로 행정부와 그 직무 담당자는 (그 직무상의 지위에서) 독립적이며 널리 일반법원(the ordinary Courts)³⁴⁾의 관할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원칙을 말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권력분립을 실행할 때 프랑스 정치가들은 일정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들은 프랑스의 ‘고등법원들’(Parliaments)이 국가적 사안에 개입함으로써 촉발했던 크나큰 해악과 그로 인해 야기된 불쾌한 감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고등법원들이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면한 근본적인 개혁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프랑스의 여론 주도층은 전제 군주만큼이나 **전제적 민주주의자들**의 특징이기도 했던, 법원의 권한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오래된 염원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프랑스의 경험이 영국의 그것과 이렇게나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제 대서양의 양안에서 서로 다른 발전을 경험한 이 도그마의 변화무쌍한 운명까지 조사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³⁵⁾

다이시의 진술은 여전히 그 분석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다이시가 그의 책을 저술할 때 미처 다루지 못한 “대서양의 양안(미국과 프랑스 - 필자 추가)에서 서로 다른 발전을 경험한 이 도그마의 변화무쌍한 운명까지” 조사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공법학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이다: 누군가가 혹은 어떤 정치세력이 특정 기관의 설립, 특정 기관의 권한 확장 혹은 축소에 대해 논평하면서 입법권, 행정권 혹은 사법권의 모습 혹은 본질은 ‘선형적’으로 이러저러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제도 설계는 권력분립원칙 위반으로서 위헌이라고 단정한다면, - 혹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공격한다면 - 이는 규범해석을 가장한 정치적 비평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다이시가 비판했듯이 프랑스인들은 (일반)법원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없게 한 뒤 행정부 내에 별도의 기관(콩세유데타)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서도 이를 권력분립원리로 정당화했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헤겔과 슈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권력은 “**분립/분리**”(Teilung)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분/구별**”(Unterscheidung)될 뿐이다.³⁶⁾ 그 점에서 우리가 권력분립을 사고할 때에는 권력이 상황에 따라 이러저러하게 구분되고 결합하는 방식, 즉 “제도적 양상블로서의 국가의 수직적·수평적·횡단적 접합(절합)”에 유념해야 하며, 이런 “국가의 제도적 아키텍처”³⁷⁾가 행정법 해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권력분립원리와 관련하여 이런 인식에 도달했다면, 다음 단계는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자유주의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

34) 보통법원, 통상법원 등으로도 번역된다.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일반법원으로 옮겼다.

35) A. V. Dicey, 앞의 책, 332-334/227-229쪽. 다이시가 사용한 “전제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정치체제를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도 바로 이 전제적 민주주의 비판을 『자유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36) 헤겔에 따르면 삼권분립의 핵심은 ‘삼권’의 분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구별’에 있으며, 그러한 구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라는 ‘통일체’를 이룬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그는 오직 ‘부정적인 오성(悟性)’이나 ‘천민(賤民)의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이나 삼권분립을 견제와 균형으로만 파악한다고 비판한다. 헤겔, 임석진 옮김, 법철학강요, 지식산업사, 1989, 428쪽.

37) 밥 제슈, 지주형 옮김, 국가론, 여문책, 2024, 123, 136쪽.

로 ① 중앙행정과 지방자치행정 사이의 견제와 균형,³⁸⁾ ② 공무원에게 (특히 인사행정 영역에서의) 공동결정권을 부여하는 길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권력분립원리 때문에 못한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공동결정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³⁹⁾ 이와 관련해서는 공동결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단의 구성방식이 민주적이고, 그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된다면 다른 판단도 가능할 것이다. ③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공무원에게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다면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에서 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특수경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경력직 공무원) 사이의 ‘정치’와 ‘행정’의 대립을 가시화할 수 있다.⁴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이지, 정부에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정도 여건만 보장해도 사안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더욱 더 신중해질 수 있다.

나아가, 권력분립원리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차단하는 방어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므로 정부나 국회 등과의 관계에서 수평적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국민으로부터의 견제를 의미하는 수직적 독립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권력분립을 사고하면서는 “제도적 앙상블로서의 국가의 수직적·수평적·횡단적 접합(절합)”과 “국가의 제도적 아키텍처”를 조금 더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법치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란 국가권력의 행사는 권력자의 자의(恣意)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인치가 아니라 법치이다. 법률은 국민과 국가기관 모두를 구속한다(법률의 양면 구속성). 법률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제약되고,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의 권한행사가 규제된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법치국가원리는 무언가 보편적 원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치국가 개념이나 원리는 결코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흔히 법치국가와 법의 지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엄격히 말하면 법치국가(Rechtsstaat)는 **특수 독일적 개념**이자 창조물이다. 영어에는 법치‘국가’라는 말이 아예 없다. 법치국가(État de droit)라는 표현이 프랑스에도 있지만, 그것이 독일식 법치국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법치국가는 입헌군주권력과 부르주아-시민계급의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19세기 당시 독일의 시민계급은 국가권력에 대한 정치적·민주적 통제 - 이것을 영국인들은 법의 지배라고 표현했다 - 를 포기하는 대신 국가권력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통제장치인 법치국가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

법치국가를 고안해 내고 법치국가를 위해 투쟁할 때 독일의 자유주의 부르주아계급은 자신들을 국민(Nation)과 동일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국가를 ‘국가 그 자체’와 동일시해 버렸다.⁴¹⁾ 이것은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국가를 국가 그 자체, 국가 일반과 동일시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19세기 독일 부르주아계급의 법치국가 개념은 이후 독일 공법학은 물론 한국 공법학에도 너무나 강력하게 뿌리내

38)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16 결정.

3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9년에 이미 이런 취지의 판결(BVerfGE 9, 268)을 하였다. 다만, 이 판결의 취지가 공무원에게 공동결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문제는 그 범위와 사항일 것이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40) “도지사의 부시장 ‘낙하산 임명’ 중단하라 - 공무원노조 지방자치법 위반 지적”, 한겨레신문 2024. 1. 11.자, 13면.

41) Franz L. Neumann, “Rechtsstaat, Gewaltenteilung und Sozialismus”, 125-126쪽.

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법치국가를 부정하면 국가와 헌정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법치국가는 역사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⁴²⁾ 자유주의의 경제적·정치적·철학적 체계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항상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⁴³⁾ 자유주의라고 하면 자유방임 혹은 아나키(Anarchie)를 떠올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주의란 하나의 특정한 질서임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 체제의 법적 질서원리는 법적 자유이다. 즉, 재산의 자유,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이다. 이 질서는 경제적 경쟁에 의해 만들어지며, 질서의 본질은 파레토의 경제학책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균형이다.⁴⁴⁾ 자유주의 단계의 법치국가를 권력분립적 부르주아적 법치국가로 달리 부르는 까닭도 이러한 균형과 관련되어 있다.⁴⁵⁾

그런데 이 19세기 독일의 형식적/부르주아적 법치국가론은 20세기 이후 '변질'되기 시작한다. 그 이론적 출발점에 헤르만 헬러가 있다. 1930년에 헬러는 “법치국가나 독재냐”라는 제목의 소논문을 발표했다.⁴⁶⁾ 이 글에서 그는 시민적(부르주아적) 또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연속적 발전**만이 법치국가가 독재로 전화(轉化)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тезис을 제시하였다. 헬러는 양 법치국가의 차이를 특히 평등원칙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찾았다. 시민적(부르주아적) 법치국가에서 평등은 단순히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지만, 각인이 그것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가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입법자는 사회적 권력관계는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모든 이의 형식적으로 평등한 자유는 자신의 사회적 우위를 가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강자의 권리로 전화한다.⁴⁷⁾

이에 반해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의 평등이 문제가 된다. 입법자는 사회적 강자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 자유의 향유와 권리보호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진다. 예컨대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가 있으면 국가는 최저 노동조건의 확보, 강행법인 노동보호법을 통하여 적절히(angemessen) 보호해야 한다. 그 밖에 임차인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규범은 계약의 자유를 현격히 제한하지만, 이 제한은 그 효과 면에서 대다수 사람에게 자유의 감소가 아니라 자유의 증대이다. 이로써 (소수의) 사회적 강자에 의한 자유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기의 이익을 자기 힘으로 관철할 수 없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자유를 확대한다.⁴⁸⁾ 민주주의적 입법자가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주도하는 현상을 두고 **법치국가의 (사회)민주주의적 경로**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법률가들은 이 정도의 온건하고 개량적 해석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앞서 보았듯이 포르스토프는 자신의 독특한 법치국가 해석을 통해 시민적(부르주아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저지하려고 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행정법학에서의 사회적 법치국가 논의이다. 한국 행정법학은 헬러의 사회적 법치국가 개념을 거의 연구하지 않았고, 이 국가론이 말하는 ‘사회적 성격’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

한국 공법학이 헬러의 개념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역사에서 보인 ‘편향적 해석’의 핵심은 이런 것

42) 프로이센 독일에서 법치국가 개념의 핵심 내용인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즉 행정의 법적 구속이 마침내 관철된 것은 1870년대이다. 데이비드 블랙번/제프 일리, 최용찬/정용숙 옮김, 독일 역사학의 신화 깨뜨리기, 푸른역사, 2007, 151쪽.

43) Franz L. Neumann, 앞의 글, 125-126쪽.

44) Franz L. Neumann, 위의 글, 126쪽.

45) Franz L. Neumann, 위의 글, 127쪽 참고.

46) 헤르만 헬러, “법치국가나 독재냐”, 헤르만 헬러, 김효전 옮김,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 산지니, 2016, 224-237쪽.

47) Ekkehart Stein, *Staatsrecht*, 170-171쪽.

48) Ekkehart Stein, *Staatsrecht*, 171쪽.

이다. 형식적 법치국가의 대립물로 사회적 법치국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국가를 대치시킨다. 그런 후에 그 실질적 법치국가란 형식적 법률의 평등을 넘어 그 법률의 위헌 여부까지 따지는 법치국가라는 식으로 이해한다.⁴⁹⁾ 이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의 ‘형식적’ 이해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헬러가 말한 또 다른 실질적 법치국가인 사회적 법치국가가 무엇인지는 논의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미 살펴보았듯이 포르스토프 식으로 사회국가를 좁게 파악하면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사회국가는 법치국가 속에 녹아들어가 버리고 그 독자적인 존재감을 상실한다. 그러나 사회국가를 넓게 파악하면 사회국가는 법치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포섭하는 원리가 된다. 헬무트 리더의 헌법학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Ⅲ. 사회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

1. 사회국가원리

헬무트 리더에 따르면 사회국가원리에는 3개의 차원이 있다. 첫번째 차원은 **국가의 사회적 의무성**이다. 이것은 모든 국가기관의 의무를 지칭한다. 즉, 입법, 행정 및 사법기관은 사회권적 제도가 그때그때의 사회적 요청에 부합하게 형성,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물질적 재화의 배분과 관련하여 배려와 배분 그리고 균형조치를 취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조치들이 문화적 재화(예컨대 학교제도)에의 정신적 참가 면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⁵⁰⁾

사회국가원리의 두번째 차원은 기본권적 지위에 이 원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른바 **기본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다. 이것은 기본권 해석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동일한 정도로 실질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⁵¹⁾ 1975년의 ‘주택 전용(轉用) 금지법’ 사례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사적 소유권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은 그 소유권의 객체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동료시민(Mitbürger)의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는 명령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주택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소유권을 현재보다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도 되는 것”,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그와 같은 이용가능성은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 건물주를 ‘조물주’ 위의 존재로 만들어 그에게 자기 능력껏 최대한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⁵²⁾ 정확히 사회국가원리로부터 기본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끌어내 보여준 판결이었다.

헬무트 리더는 사회국가원리의 세 번째 차원을 전개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민주주의원리와 연결한 뒤, 아주 중요한 요구를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를 민주주의적 반석 위에 확고하게 올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는 차이가 없다. 이를 ‘국가와 사회의 동질화’(Homogenisierung von Staat und Gesellschaft)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국

49)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91헌가5, 90헌바3(병합) 결정.

50) Ekkehart Stein, *Staatsrecht*, 172쪽.

51) Ekkehart Stein, *Staatsrecht*, 172쪽.

52) BVerfGE 38, 348(370f). 재산권과 주거권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필자의 다음 책을 참고할 것. 이계수, 반란의 도시, 베를린, 스리체어스, 2023.

가원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원이 이미 판례에서도 관철되고 학계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지만, 이 세 번째 차원만큼은 그렇지 못했다.⁵³⁾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19세기 부르주아 자유주의 헌정 질서 내에서 확고히 자리잡은 국가와 사회(정확히는 경제)를 분리한다는 생각(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이 경제영역으로의 국가의 개입을 차단 해왔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운동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요구사항으로 내걸며 봉건제와 군주제에 맞서 투쟁했다. 자유주의적 의회주의 헌정체계는 이론적으로는 이 요청을 확고히 붙들고 나갔으나, 실제로는 이를 대폭 제한하였다. 이 체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계층이 참여하기 시작한 정치적 의사형성 영역과 여전히 사적인 처분권에 맡겨진 경제 영역의 근본적인 분리 위에서 작동했다. 여기서 인민주권은 그 한계에 봉착한다. 정치적으로 이미 타도된 세습군주제가 경제영역에서는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되었다. 기업가는 예전에 절대군주가 자신의 토지를 지배했듯이 자기 기업에 대해 제한 없는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 이론과 부르주아 국가는 오늘날까지 바로 이러한 권력분립, 즉 정치영역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민과 경제영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가 사이의 분립을 원칙적으로 확고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런 식의 권력 양분은 권력을 제한당한 다수 민중이나 경제적으로 지배권을 가진 소수세력이나 그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 상층계급은 그들의 사회적 지배는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중은 그들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잠정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므로, 갈등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다.⁵⁴⁾ 이 갈등을 해소할 대안으로 전후 독일 우파들이 생각한 해결책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권력 양분을 재조정하는 모델이었다. 이런 ‘사회국가’를 그들은 **사회적 시장경제**라 불렀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헬무트 리더는 국가의 개입을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좌파적 비전을 제시했는데, 반대파들이 이를 쉽게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⁵⁵⁾ 그러므로 헬무트 리더가 말하는 사회국가 원리의 세 번째 차원은 그가 활동하던 1960년대, 70년대는 물론이었고 지금도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 사회국가원리의 이 세 번째 차원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이제 항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하자.

2. 민주주의원리

“오늘날 민주주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빈약하기까지 하다. (...) 민주주의라는 말은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꿈과 힘을 싣는 텅 빈 기표이다.”⁵⁶⁾ 행정법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모호하고 그 역할은 빈약하다.

왜 그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

53) Ekkehart Stein, *Staatsrecht*, 172쪽.

54) Reinhard Kühnl, *Formen bürgerlicher Herrschaft*, 74-75쪽.

55) Reinhard Kühnl, 위의 책, 75쪽 참고. 한편 이 갈등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 번째의 길이 있다. 그것은 헬무트 리더와 같은 시도, 즉 정치적 민주주의를 사회 영역에까지 확장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경제적 지배세력이 선택하는 길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서의 민주주의를 재차 폐기하고, 명령과 복종의 원칙을 사회 전체의 조직원리로 만든다. 이로써 경제적 권력은 보존·강화되지만, 정치적 민주주의는 소멸한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분립이 파국적으로 해소(解消)되어 버리는 이러한 체제를 라인하르트 쿨른은 파시즘이라고 부른다. Reinhard Kühnl, 위의 책, 같은 곳.

56) 웬디 브라운, “오늘날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이다 ...”, 슬라보예 지젝 외, 김상운/양창렬/홍철기 옮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난장, 2010, 85쪽.

2항에서 말하는 모든 권력(복수의 권력)은 주권에 의하여 조직되고 주권이 위임한 현실적 국가권력인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⁵⁷⁾ 이러한 해석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 헌법 제20조 제1항 제1문과 그에 대한 독일 헌법학계의 주류적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⁵⁸⁾

민주주의원리가 통용되는 영역은 이로써 국가권력에 한정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행정권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은 행정권을 직접민주주의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통제는 자신의 대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화 정도는 행정이 국회의 의사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측정된다.⁵⁹⁾ 국회의 의사라 하면 통상 법률을 생각하지만, 꼭 그것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행정부가 대통령령과 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기관의 의사(법률)를 정면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국회는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영국, 독일 등과 달리 이런 통제 수단이 없다.

그 외에도 국회에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거나 국회가 행정부의 인사 정책에 지침을 제시하는 방안도 있고, 국회의 결의안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는 길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어느 것이나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단들이다. 앞으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등 행정법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민주주의 원리와 행정법’에서 논의해야 할 쟁점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사회권력**(예컨대 사립학교)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문제이다. “사회 있는 곳에 권력이 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권력을 통제하는 민주주의적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가 국가권력이든 아니면 사회권력이든 그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데 동원되지 않게 하려면 어떠한 권력이든 민주주의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제의 정당화 근거를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끌어올 수 있다면 말이다.

얼마 전만 해도 사회권력이라 하면 주로 재벌기업이나 노동조합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도 각 부문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구조적 복잡성이나 기능적 복잡성이 크게 증대하였다. 우리 사회의 이같은 역동화 과정에서 각종 사회단체, 예컨대 공공서비스 관련 영리 조직들이 분출하고, 이들이 저마다의 활동 영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써 경제·노동·교육·문화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이 크고 작은 사회권력에 의하여 포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권력의 국가권력화와 이에 따른 사회의 재봉건화 현상이다. 사회권력 가운데 특히 경제력이 막강한 재벌기업은 이미 국가권력에 버금가거나 국가 권력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⁶⁰⁾ **사기업이 공용수용의 주체**가 되어 수용권을 행사하는 사례 같은 것이 쉬운 예이다.⁶¹⁾

혹자는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를 말하기도 한다.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마치 디지털 영지처럼 세상을 지배한다.⁶²⁾ 사정이 이러한 데도 공법학의 민주주의 담론은 아직도 국가와 사회를 엄격히 구분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분단 논리에 갇혀 민주주의를 국가영역의 문제로 축소한다. 이래서야 행정법이 해방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권력, 특히 그중에서도

57)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120쪽.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2, 137쪽.

5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자기결정”(Selbstbestimmung des Volkes)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원리가 관철될 수 있는 영역은 국가로 한정하였다. BVerfGE 83, 72.

59) Heiko Faber, *Verwaltungsrecht*, 42쪽.

60) 국순옥, “제3회 대안헌법이론 2”, 민주법학 제27호, 2005, 342-343쪽.

61)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

62) 야니스 바루파키스, 노정태 옮김, 테크노퓨달리즘, 21세기북스, 2024.

사회권력을 제어하는 것을 규제라고 하며,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바로 행정법인데, 오늘날처럼 탈 규제, 규제철폐가 얘기되는 상황이라면 행정법의 공익보호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규제되지 않은 권력은, 그것이 어떠한 권력이든 부패하게 되어 있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필요하다. 그 점에서 가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2011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그 규제 대상을 사회 영역으로까지 넓힌 것은 사적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한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1991년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줄여서 교원지위법이 제정되었다. 교육현장에서의 투쟁의 성과물이자 국가의 '보호' 조치였다. 1987년 이후 사립학교 교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운동을 강력히 펼치자 국가는 노동조합 설립의 길을 원천봉쇄 하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더욱더 강력히 보장하는 방식의 유화책을 선택했고, 이것이 교원지위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⁶³⁾ 이 법의 제정 이후에도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여전히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았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계속해서 민사소송으로 불리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⁶⁴⁾ 교원지위법은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했다. 즉,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불리한 처분을 다툴 수 있게 하였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원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인 징계처분을 다투어야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은 위 조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투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적 권력 규제법으로서의 행정법의 순기능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교원지위법의 권리구제절차가 만들어지기 전 사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려면 각 학교 법인이 그 산하에 설치하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거나(1991. 5. 31. 법률 4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립학교법」 제67조) 민사소송을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재심위원회라는 것이 결국 사립학교 법인의 영향력하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⁶⁵⁾ 이제는 사립학교 교원도 사적 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재심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학교법인에 철저히 종속되는 현실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교원지위법의 민주주의적 의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사립학교법인도 다툴 수 있게 되면서 상당히 퇴색하였다.⁶⁶⁾

사회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는 자유의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변형하고 확충하는 공화주의의 관점에서든 정당화가 가능하다. 필립 페팅은 비지배로서의 자유(liberty as non-domination)를 강조한다. 즉, 자유를 단순히 간섭의 회피(liberty as non-interference)와 동일시하는 지금의 관행, 즉 자유주의적 자유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

후자는 문자 그대로 타자로부터의 간섭의 결여이지만, 전자는 지배의 결여(타자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의 결여, 타자의 의식적 간섭에 의해 상처받기 쉬운 것의 결여, 타자의 자의적인 간섭에 휘둘리지 않는 것)로 표현된다.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자의적 영향력, 다시 말해 잠재적으로 변덕스러운 의지 혹은 잠재적으로 타인의 특수한 판단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는 이러한 종

63) 김용,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구제”, 교육법학연구 18권 1호, 2006, 74쪽.

64) 이승환, “사립학교 교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38호, 2017, 381-408쪽. 특히 382-399쪽.

65) 실제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심에서 교원의 재심 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김용, 앞의 논문, 74쪽.

66)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5헌바19 결정(합헌·각하)’을 거쳐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결정’에서 사립학교법인에게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할 제소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속과 의존으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한다.⁶⁷⁾

비롤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배, 노동자에 대한 경영자의 지배, 퇴직자에 대한 연금담당공무원의 지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지배, 젊은 학자에 대한 원로교수의 지배, 시민에 대한 검사의 지배를 예로 들면서 아내, 노동자, 퇴직자, 환자, 젊은 학자, 시민은 반드시 간섭을 받지 않아도, 상대가 그러하고자 하면 간섭받는 위험이 항상 있는 일종의 예속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이러한 지배로부터 그들이 언제나 보호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이것은 자유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끌고 가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주의 이념을 통해 민주주의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치국가의 도구가 정치적 자유의 한계일탈을 제약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폭력과 차별과 혐오를 말하면서, 그것을 민주주의적 기본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맞서려면 자유개념의 재해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식의 전투적 민주주의론이 아니어도,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공화주의적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이들을 제어할 도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⁶⁹⁾

IV. 탈자본주의-민주주의 행정법을 위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절합 전략

탈자본주의-민주주의 행정법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진영에게 유리한 고지를 제공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절합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자유주의를 포섭한 민주주의라고는 하나, 실상은 자유주의에 압도된 입헌민주주의 담론에 하릴없이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견인해내고, 민주주의의 수직적, 수평적 확장을 가능케 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절합은 무엇인지 이론적·실천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법률가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자본주의와 행정법 1, 2>에서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을 분석해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곧 (사실상 마음대로 할) 자유의 지배이다. 자유주의법학-자유주의자들은 이것에 대해 하등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가와 관료에 대해서도 그들의 자유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나는 이런 '입헌'민주주의적 발상이 주류-우파 법률가에 의한 민주주의의 순치 혹은 민주주의의 항쟁성 제거라고 평가한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민주주의(그리고 자유주의)의 실체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의 관점은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공법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불)가능성은 이런 이론적 성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시화될 것이다.

67) 필립 페티, 광준혁 옮김, 신공화주의: 비지배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나남, 2012, 42쪽.

68) 모리치오 비롤리, 김경희/김동규 옮김, 공화주의, 인간사랑, 2006, 92-93쪽.

69) 네오나치가 주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독일의 좌파-리버럴 공법학 진영은 두 개의 입장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거로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민주적 공론장을 통한 제어(법적 규제 반대)를 주장하는 견해 - 으로 나뉘어 논쟁했다.

동아시아 자본주의와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명암

장대업(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 Asian Labour Review 편집위원장.⁷⁰⁾)

*이 글은 2026년 6월 27일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 창립 3주년 심포지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위해 작성되었음.

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의 전망을 그리는 작업은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로 이해되어 온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노동에 대한 재조명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아시아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가 거주하고 일하는 지역이다. 자본주의가 민주화 된다면 그 “민주”의 주인이 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한다. 21세기 첫 20년이 끝날 무렵에는 세계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며 일하고 있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에만 동아시아의 노동력은 약 7억 6,400만 명에서 12억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⁷¹⁾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규모와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노동에 대한 관심은 동아시아와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지배적인 역사 서술 속에서 발견하기 힘들다.

2. 초기 동아시아 연구는 주로 경제적·문화적으로 ‘후진적’이라고 간주된 동아시아 사회의 저발전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발전은 하나의 보편적 경로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었고, ‘타자들’은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발전의 원형과 비교되면서 성공과 실패사례로 분류되었다.⁷²⁾

이후 일본,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NIEs), 그리고 중국에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찬양받게 되었고, 동아시아에 대한 학술적·대중적 이해는 ‘글로벌 공장(global factory) 문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연구 흐름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발전국가론, 수출지향 산업화 연구,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연구들은 모두 동아시아가 어떻게 세계적 축적의 중심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기여해왔다.⁷³⁾

70) <https://labourreview.org/>

71) 반면, 유럽은 세계 노동인구의 약 10%, 북미는 약 5%만을 차지한다. <https://ilostat.ilo.org/topics/population-and-labour-force/>

72) 이에 대한 비판은 Berger, “Yellow Mythologies: The East Asian Miracle and Post-Cold War Capitalism”; Berger, The Battle for Asia: From Decolonization to Globalization; Cumings, “We Look at It and See Ourselves: Fantasies of Korea · LRB”; Nilsen, “Thinking Capitalist Development Beyond Eurocentrism”; Ravi Arvind Palat, “Beyond Orientalism: Decolonizing Asian Studies,” Development and Society 29, no. 2 (2000): 105-35.

73) 고전적인 개발국가 문헌은 다음을 참조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ggard, Stephen. 1990.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더 나아가 일부 학자들은 이를 ‘아시아의 부활’로 규정하며 ‘아시아의 세기(Asian Century)’의 도래를 예견하기도 했다.⁷⁴⁾

3. 이러한 연구들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유럽중심적이다. 왜냐하면 그 핵심 관심이 서구 자본주의의 제도들이 동아시아 주변부에 성공적으로 이식될 수 있는지, 혹은 동아시아라는 타자가 자본주의로 가는 ‘정상 경로’와는 다른 평행우주를 만들어내고 서구에 대한 문명적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⁷⁵⁾ 동시에 이들은 철저히 자본중심적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산업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시장이 국민국가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노동은 이러한 서사 속에서 생산요소, 정책 변수, 혹은 발전의 수동적 수혜자로만 등장한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부상을 떠받친 가장 중차대한 사회적 변화, 즉 이 지역에서 세계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노동인구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적은 관심만을 받아왔다.

4. 이러한 인식론적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부상 이후 지배적이었던 동아시아 ‘주변부’에 대한 기존 역사 서술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동아시아를 극동(Far East), 동아시아(East Asia),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인도차이나(Indo-China)와 같은 관습적인 지역 구분을 통해 보는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범주들은 아시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아시아를 그 주변적 타자로 위치시킨 제국주의적 지도 그리기와 지식 생산의 산물이었다.⁷⁶⁾ 오늘날 흔히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 끝자락으로 한정되는 ‘동아시아’라는 범주 자체도 식민주의적 지식 생산과 냉전 지정학에 뿌리를 둔 유럽·미국 중심의 지도 제작과 명명 관행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분류는 아시아 동부 지역에 존재해 온 오랜 상업적, 노동적, 사회적 연계와 공통 경험들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동아시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인 동아시아를 자명한 장소 단위로 전제하는 대신, 이를 아시아의 동 반구(eastern hemisphere of Asia)라는 사회적 지리 개념을 통해 재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오늘날 ASEAN 10개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이 포함되며, 이들 사회와 경제는 역사적으로 노동과 사회적 변동의 공통된 궤적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다. 이러한 ‘더 큰 동아시아(larger East Asia)’에 주목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세계자본주의 형성의 중심 무대에 위치시킴으로써, 동아시아를 세계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변형되고, 또한 도전받아 온 핵심 공간으로 사고하는 것이 동아시아를 세계자본주의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노동의 대륙으로 보는 관점이다.

1925-19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Wade, Robert. 1990.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74) Mahbubani, Kishore. 2009.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New York: Public Affairs; Mason, Andrew. D. and Shetty, Sanjay. 2019. *A Resurgent East Asia: Navigating a Changing World*. Washington DC: World Bank.

75) 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닌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하고있다는 아리기의 스미스주의적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Arrighi 2007).

76) Donald K. Emmerson,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 no. 1 (1984): 1-21; Charles Holcombe, *A History of East Asi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Hui Wang, “A New Way to See World History: An Asia That Isn’t the East,” *Le Monde Diplomatique*, 2005.

5. 동아시아를 노동의 대륙으로 사유하고, 동아시아 노동을 세계자본주의 이해의 중심에 놓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다. 동아시아 노동을 세계자본주의 이해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분석의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노동의 관계를 이해해 온 기존의 역사 서술 전체를 다시 쓰는 일이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민주주의, 노동의 삼각관계의 역사는 서유럽과 북미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 이 서술 속에서 서구의 자유임금노동, 제도화된 노동조합, 단체교섭, 복지국가,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이 언젠가 도달해야 할 '정상적' 형태로 제시되었다. 반대로 아시아의 노동은 불안정하고, 비공식적이며, 미조직적이고, 국가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노동, 혹은 근대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이해되어 왔다.

6.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세계자본주의의 실제 역사를 거꾸로 바라보게 만든다. 세계자본주의는 결코 안정된 자유임금노동만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노예노동, 식민지 수탈, 강제노동, 농민의 토지 박탈, 여성의 무급 재생산노동, 이주노동, 비공식 노동에 의존해 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권리와 비교적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자유임금노동에 의존해 왔다. 이 다양한 노동 형태들은 서로 분리된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총체 속에서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를 조건 지어 왔다. 따라서 문제는 어떤 노동이 더 '진짜' 자본주의 노동인가가 아니다. 오히려 물어야 할 것은 왜 우리는 오랫동안 특정한 형태의 노동, 즉 전후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확립된 서구의 안정적 자유임금노동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정치적 형태만을 규범적 모델로 간주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7. 바로 여기에 근대화론적 인식론의 문제가 있다. 근대화론은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경로를 인류 보편의 미래로 상정하고, 비서구 사회를 그 미래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과거로 배치한다.⁷⁷⁾ 이 틀 속에서 유럽과 북미의 노동은 발전된 노동이고, 아시아의 노동은 정체된 노동이다. 서구의 노동조합은 성숙한 노동운동의 모델이고, 아시아의 산발적 파업과 비공식적 저항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미완의 운동으로 취급된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보편적 규범이고,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예외적이거나 불완전한 형태로 간주 된다. 근대화론과 그 역사주의적 상상 속에서, 심지어 아시아의 많은 노동 '전문가'들—연구자와 활동가 모두—도 서구만을 바라보며 유럽과 북미에서 모델을 찾고, 유럽·미국의 거울에 비친 '못생긴' 아시아 노동의 모습을 한탄해 왔다. 그러나 어쩌면 아시아 노동운동이 더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식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시아의 과거는 북반구의 거울에 비추어진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며, 아시아 노동의 새로운 전략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한다.

근대화론적 인식론은 아시아에 대한 19세기적 인식틀에 그 기원을 가진다. 이 인식은 근대 초기에 형성되어 식민지 시대에 절정에 이르렀으며, 전통과 근대의 시간적 단절(temporal rupture), 서구와 나머지 세계의 공간적 구분이라는 사회과학의 정통 세계관으로 굳어졌다.⁷⁸⁾ 19세기

77) Walt Whitman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History Review 12, no. 1 (1959): 1-16; Walt Whitman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Dipesh Chakrabarty, Provincializing Europ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78) Bhabra, Gurinder. 2007. Rethinking modernity: Postcolonialism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Springer.

적 인식틀이란 ‘동양적 전제주의(oriental despotism)’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럽의 아시아관이였다. 이 관점 속 아시아는 내적 역동성이나 역사성이 없는 정체적 공간이자, 시간 속에 얼어붙은 사회로 묘사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베르니에, 몽테스키외, 헤겔로 이어지는 전통을 이어받은 이 관점은 아시아를 피상적 자연·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척박한 토양, 거대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집권 국가의 필요성, 절대 국가권력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목가적 농촌 공동체, 자유의 부재, 국가의 토지 독점, 사유지의 부재,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씨앗’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⁷⁹⁾

이러한 광범위하고 억지스러운 일반화 속에서 터키, 페르시아, 인도, 중국 같은 다양한 사회들은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범주 아래 묶였고, 이 틀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는 역사서술에서 제외되었다. 19세기 유럽 사상가들은 이렇게 재해석된 아시아 사회들을 인류 문명의 단선적 위계질서에서 최하위에 배치했다. 그 정점에는 자본주의 유럽이 위치했다. 이 오래된 유럽중심주의, 이를 계승한 근대화론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 아니라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까지 규정해 왔다.

8. 이러한 일련의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예외없이 발견된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임금노동이 유럽에서 시작해 유럽 내부의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이후 비유럽 세계의 ‘전통적’ 사회관계를 대체하며 확장되었다고 보는 유럽중심적 자본주의 확산론(diffusionism)이 대표적이다. 이 확산론은 블라우트(Blaut)가 “터널 시야(tunnel vision)”라 부른, 유럽 외부 세계의 역사가 유럽 내부의 변화를 추동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⁸⁰⁾ 예컨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로버트 브레너(Robert Brenner)는 자본주의의 기원을 “하나의 지리적 지역-영국 농촌”에서 찾는다.⁸¹⁾ 그곳에서 농민들의 ‘절반의 성공’에 그친 계급투쟁이 농노제와 독립 소농을 모두 해체했고,⁸²⁾ 그 결과 지주-자본가 소작인-농업 임노동자로 구성된 삼분 농업 체제가 등장하여 대규모 농업 운영, 자본투입, 기술혁신을 촉진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이 다른 유럽 지역이나 세계의 사회경제 공동체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농업 자본주의를 형성했다는 것이다.⁸³⁾ 브레너에게 자본주의의 핵심 표지는 바로 노동이 상품이 되는 ‘자유 임노동 체제’이다.⁸⁴⁾

79) Anderson, Perry. 2013. Lineages of the Absolutist State: Verso, 462-472; Cumings, Bruce. 2005. "We look at it and see ourselves: Fantasies of Korea". London Review of Books; Wang, Hui. 2005. "A New Way to See World History: An Asia that Isn't the East." Le Monde Diplomatique February 2005, <https://mondediplo.com/2005/02/02asia>.

80) James M. Blaut, "Colonialism and the Rise of Capitalism," Science & Society 53, no. 3 (1989): 260-96; James M. Blaut, The Colonizer's Model of the World: Geographical Diffusionism and Eurocentric History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1993).

81) Anievas and Nişancioğlu 2015, 23. 브레너의 확산론은 Brenner, Robert. 1977.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neo-Smithian Marxism." New Left Review, 1(104): 25-92; Brenner, Robert. 1985a.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In Aston, T. and Philpin, C. (eds.) The Brenner Debate: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63; Brenner, Robert. 1985b. "The agrarian roots of European capitalism." In The Brenner debate: Agrarian class struc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re-industrial Europe, edited by T. Aston and C. Philpin, pp. 213-3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를 참조.

82) Brenner 1977. 76

83) Brenner 1985a, 49.

84) Heller, Henry. 2011. The birth of capitalism: A twenty-first-century perspective. London: Pluto Press, 84.

브레너의 설명에서 영국의 자본주의 전환은 철저히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세계시장은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전환기에 외부 수요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지만,⁸⁵⁾ 이는 영국만을 위한 특수 조건이 아니라 유럽경제의 보편적 조건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발생하여 자본주의 발전에 “유리했던 계급·사회 생산관계”에 비해 부차적이었다.⁸⁶⁾ 따라서 그의 역사서술 속에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노동이 유럽 자본주의 성립 이전과 이후에 수행한 수탈된 노동은 “진정한” 자본주의적 노동이 아니며, 자본주의의 탄생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도 아니다. 이 자본주의 단일 기원(single-origin) 이론은 글로벌 자본주의 형성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다양한 노동 형태들을 분리시킬 뿐 아니라, 지리·인종·발전단계에 따라 동일한 역사적 순간을 살아가며 노동했던 이들 사이에 위계적 구분을 만들어낸다.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전근대적 수탈 노동’과 ‘근대적 착취 노동’ 사이의 암묵적 위계는, 오늘날 주변부의 ‘비정상적’ 노동이 ‘저발전’을 낳고 핵심부의 ‘정상적’ 산업노동이 ‘발전’을 낳는다는 서술 속에서 재생산된다.

9. 마르크스주의의 유럽중심적 시각은 부분적으로는 분명 19세기적 인식들의 영향을 받았던 마르크스의 책임이다. 『공산당 선언』(1848)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중국의 “장벽”이 부르주아 상품의 “값싼 가격”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⁸⁷⁾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1859)에서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생산양식 발전의 가장 원시적인 단계로 위치시켰다.⁸⁸⁾ 또한 그는 중국을 “미신적 신앙”과 “은둔적 고립”의 사회로,⁸⁹⁾ 인도를 “역사가 전혀 없는” 정체된 사회로 묘사하며,⁹⁰⁾ 영국 식민주의가 이들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파편적 증거와 과도한 일반화에 기초한 ‘동양적 전제주의’라는 19세기 유럽의 통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들은 비유럽 세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는 제국주의적 폭력이 진보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부르주아 문명의 내재적 야만성”을 비판하기 시작했다.⁹¹⁾ 더 중요한 변화는 그가 미국 남북전쟁과 식민주의를 다루면서 노예제와 식민지 수탈이 유럽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 조건이었음을 인정했고, 『자본』에서는 식민지 수탈을 유럽 자본축적의 필수적 전제로 분석했다는 점이다.⁹²⁾ 또한 반식민 투쟁을 유럽 혁명의 잠재적 촉발 요인으로 평가했고,⁹³⁾ 주변부 사회가 유럽과 동일한 발전 경로를 따르지 않고도 다른 사회적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⁹⁴⁾ 이 시기에 마르크스는 더 이상 식민주의를 생산력을 확산시키는 역사적 수단으로 보거나 식민지 민중을 수동적 존재로 이해하지 않았다. 태평천국운동(1850~1864)과 세포이 항쟁(1857~1859) 등 아시아 민중의 대규모 저항이 그에게 아시아인들이 전제주의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자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마르크스로 하여금 해방의 가능성을 자본이 아니라 저항하는

85) Brenner 1977, 76.

86) Brenner 1977, 76.

87) Marx, Karl and Friedrich Engels. 1998 [1848]. The communist manifesto. London: Verso, 39-40.

88) Marx, Karl. 1971 [1859].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London: Lawrence and Wishart, 21.

89) Marx, Karl. 1853. “Revolution in China and in Europe.” In Karl Marx-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MECW), Vol. 12: 93-100, 94.

90) Marx, Karl. 1853. “The future results of British rule in India.” In Karl Marx-Frederick Engels Collected Works (MECW), Vol. 12: 217-222, 217.

91) Marx, Karl. 1853b, 221.

92) Anderson, Kevin. 2010. Marx at the margins: On nationalism, ethnicity, and non-Western societ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7-188.

93) Anderson 2010, 144.

94) Anderson 2010, 229.

노동대중 속에서 찾도록 만들었으며, 그의 인식론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0. 또한 중요하게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자유 임금노동과 수탈받는 노동 사이에 위계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 제1권 후반부에서 그는 유럽 내부와 외부에서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동원된 폭력과 수탈의 현실에 주목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마르크스는 영국의 상대적 과잉인구, 저임금 노동자, 유랑민, 빈민, 농촌 이주민 등의 삶을 묘사하며, 수탈(expropriation)이 자본주의 이전의 유산이나 식민지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축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자본주의의 동시대적 구성 요소임을 보여준다.⁹⁵⁾ 이들에게 자본주의는 “비참의 축적”과 “노동의 고통”이 공존하는 체제였다.⁹⁶⁾

이러한 분석은 임노동의 해부에 집중된 『자본』의 논리적 전개를 자본주의의 실제 역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르크스가 암시하듯, 자본주의 하의 노동은 착취와 수탈이 결합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자유 임금노동은 그 스펙트럼의 한 형태일 뿐이다. 자이러스 바나지(Banaji)가 지적하듯, 자본주의는 단일한 노동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 총체이며, 현실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노동 형태들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자유 임금노동만으로 이루어진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 수탈과 착취를 결합하는 세계체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파텔(Patel)과 무어(Moore)가 지적하듯, 영국 산업혁명의 임금노동자들은 미국 플랜테이션의 노예노동에 의존했고,⁹⁷⁾ 유럽의 자본축적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노동자들의 수탈과 분리될 수 없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서로 다른 노동 형태들이 분리되어 발전한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노동의 대륙’들이 동시에 그리고 상호연결된 방식으로 세계자본주의를 구성해 온 역사였다. 노동의 대륙(Continent of Labour) 관점은 “주변부”, 특히 가장 큰 노동의 대륙 동아시아의 방대한 노동력이 식민지 수탈, 냉전기 산업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반에 걸쳐 수행한 모순적 역할—즉, 글로벌 자본주의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도전하면서 그 방향을 형성해 온 역할—을 올바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11. 이렇게 동아시아를 ‘노동의 대륙’으로 바라보면, 더구나 세계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노동의 대륙임을 인정한다면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의 위계는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아시아 노동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동시적이고 불균등한 (simultaneous and uneven) 형성과정속에서 구성적 요소로 참여하였고 동아시아는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가 형성되고 확장되고 재편되고 도전받아 온 핵심 공간이다. 식민주의는 동아시아 노동의 착취와 수탈을 통해 식민지 초과이윤을 창출하고, 동아시아의 화폐경제를 확대하며, 지역적 생산관계를 파괴했다.⁹⁸⁾ 초기 식민지 이윤은 다양한 식민지 수탈·작물재배 체제하에서 자영농들에게서 잉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었으며,⁹⁹⁾ 식민지 지배가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영세농의 토지와 노동 수탈, 플랜테이션·광

95) Marx 1990, 794.

96) Marx 1990, 799.

97) Patel, Raj, and Jason W. Moore. 2017. A history of the world in seven cheap things: A guide to capitalism, nature, and the future of the plane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01-104.

98) Elson, Robert E. 1992. The politics of colonial exploitation: Java, the Dutch, and the cultivation system. Ithaca: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me; Fasseur, Cornelis. 1986. “The Cultivation System and its Impact on the Dutch Colonial Economy and the Indigenous Society in Nineteenth-Century Java.” In C. A. Bayly and D. H. A. Kolff (eds.), Two Colonial Empires: Comparative Essays on the History of India and Indonesia in the Nineteenth Century (pp. 137-154). Dordrecht: Springer Netherlands.

99) Breman, Jan. 1983. Control of land and labour in colonial Java. Dordrecht: Foris Publication; Elson,

산에 결박된 이주노동자들의 수탈, 제한적 식민지 공업시설의 임금노동자 착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되었다.¹⁰⁰⁾ 동아시아 노동자들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의 산업 확장을 떠받치고 서구 소비자의 제국적 생활양식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토대 역할을 했다. 냉전기 산업화 시기 아시아의 신흥 공업국들의 노동은 미국·유럽 시장을 위한 값싼 소비재 생산을 통해 글로벌 북반구의 전후 호황을 함께 구성했다. 대부분의 탈식민지 아시아 경제가 여전히 식민지 유산에 기반한 1차 상품 생산에 머무르는 동안, 대만·싱가포르·한국·홍콩 등 신흥공업국 노동자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개발국가 아래에서 신설된 수출 제조업체들을 위해 노동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특히 농촌 출신의 젊은 여성 노동자를 혹독하고 위험한 노동과정에 복종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노동자들은 극도로 긴 노동시간, 참혹한 작업환경, 저임금에 시달렸다. 수십만 명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이들이 교육과 자기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러한 노동체제가 1980년대 민주화 이전까지 동아시아 산업화를 지배했고, 북반구 전후 호황과 소비자-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기에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지의 방대한 노동력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편입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위기관리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특히 중국은 수출지향 산업화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동아시아계 초국적 기업들에 수천만 농촌 이주노동자를 공급하며 1998~2007년 연평균 10% 성장했고, 동아시아 경제위기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중국의 수출산업은 값싼 소비재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저소득층의 생계 또한 지탱했다.

12. 따라서 동아시아 노동은 뒤쳐진 노동도, 주변적 노동도 아니다. 그것은 세계자본주의의 과거를 가능하게 했고 현재를 작동시키는 중심적 노동이다. 이 관점은 민주주의의 역사 또한 새롭게 보게 만든다. 오랫동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서유럽과 북미의 경험을 기준으로 설명되어 왔다. 민주주의는 경제성장, 산업화, 중산층과 시민사회의 확대와 함께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정치적 동반자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는 식민지 지배, 개발독재, 군사정권, 일당체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와 결합하면서 성장해 왔다. 동아시아의 경험은 오히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없이도, 때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면서도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민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발전국가의 산업화는 노동권의 억압과 정치적 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때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동반했지만 여전히 노동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시장과 기업의 권력에 종속시켰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따라온다는 명제는 동아시아의 역사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13. 역으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확장과정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발전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 노동대중이 자본주의적 권력관계에 맞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헌법, 선거, 정당, 의회, 시민권의 문제로 이해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

Robert E. 1997. The end of the peasantry in Southeast Asia: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peasant livelihood, 1800-1990s. Basingstoke: Macmillan.

100) Breman, Jan. 1989. Taming the collie beast: Plantation society and the colonial order in South East As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tta, Anindita. 2021. Fleeting agencies: A social history of Indian coolie women in British Malay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ur, Amarjit. 2004. "Labour dynamics in the plantation and mining sector." In Becky Elmhirst and Ratna Sapptari (eds.), Labour in Southeast Asia: Labour processes in a globalised world, London: RoutledgeCurzon; Wolf, Eric. R. 1982.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대중이 공장과 거리에서, 농촌과 도시에서, 식민지 권력과 개발독재와 군사정권, 신자유주의 국가에 맞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했던 투쟁의 역사였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은 서구의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투쟁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다. 유럽과 북미의 민주주의 전환은 제국주의를 통해 수백 배 많은 주변부 노동대중을 가장 비민주적인 식민통치에 몰아넣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제국주의 전쟁을 위한 정치적 합의와 식민지 초과이윤이라는 분배정의의 물질적 기반이라는 외적 조건이 안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요구와 맞물린 결과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민주화는 이렇게 위로부터 주어진 유리한 조건 없이 노동대중의 투쟁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성과였다. 식민지 동아시아의 노동자들은 침묵하는 노동자가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아시아인들은 지금도 식민지 민중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 노동자들은 잔혹한 제국주의 권력에 맞서 싸웠다. 아시아의 거의 모든 공동체에는 반제국주의적 노조·농민조직을 결성하고 식민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역사가 있다. 대륙 곳곳의 지역사회는 강력한 제국들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종식시키고 독립을 획득한 성공의 경험을 공유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투쟁은 자본주의 발전의 주변부적 성격에 저항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 노동자들 역시 개발 신화가 묘사한 ‘산업전사’의 역할에만 충실하지 않았고, 그들은 진보적 민주주의의 건설자이기도 했다. 폭력적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저항과 함께 노동조합과 비밀결사들은 계속 등장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노동자들은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요구하기 시작했고, 개발국가 이론가들이 지금도 칭송하는 가장 잔혹한 두 개발독재 체제에서 민주화를 주도했다. 한국과 대만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은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¹⁰¹⁾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은 수하르토 체제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운동과 노동정치를 만들어냈다.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들은 동아시아에 ‘장기적 반민주주의 전통’ 따위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은 민주화 이후 빠르게 제도정치에서 배제되기는 하였지만 민주화의 단순한 보조세력이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 균열을 낸 핵심 행위자였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1980년대 말에서 2000년대까지 이어진 민주주의의 확장은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집단적 저항 속에서 형성된 미완의 프로젝트로 드러난다.

14. 동아시아의 민주화가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은 이유 역시 노동의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노동인구를 보유한 최대의 노동의 대륙이 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엔진이 되었지만, 동시에 노동의 비공식화, 불안정화, 이주화, 플랫폼화, 성별화, 세대적 분절이 가장 광범하게 전개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노동자는 많아졌지만 노동의 집단적 힘은 자동적으로 커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조직되고, 생산은 초국적으로 통합되며, 노동자는 국적, 체류 자격, 성별, 산업, 고용 형태에 따라 분리된다. 세계 최대의 노동의 대륙은 동시에 가장 깊이 분절된 노동의 대륙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동아시아 발전의 노동 역설이다. 이

101) Chang, Dae-oup. 2022. “Korean labour movement: The birth, rise and transformation of the democratic trade union movement.” In Sojin Lim and Niki J.P. Alsford (eds.), Routledge handbook of contemporary South Korea (pp.159-174). London: Routledge; Hsiao, Hsin-Ming. 1992. “The labor movement in Taiwa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look.” In Denny Roy Simon and Michael Y. M. Kau (eds.), Taiwan: Beyond the economic miracle. Armonk, NY: M. E. Sharpe; Koo, Hagen. 2001. Korean workers: The cultural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inns, John and Robert Tierney. 2003. “The labour movement in Taiwan.” Labour History, 85: 103-128.

역설은 현재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결된다. 노동이 파편화 될수록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약해진다. 노동조합이 약화되고, 노동자가 정치적 대표성을 잃고,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되면서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로 축소되었다. 선거는 유지되지만 경제 권력은 민주적 통제 밖에 남게 되었다. 의회는 존재하지만 생산, 투자, 고용, 주거, 돌봄, 기술, 생태 전환에 관한 결정은 자본과 국가 관료, 초국적 기업, 금융시장의 손에 맡겨졌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가권력을 선거로 교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적 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작업장으로, 지역사회로, 돌봄의 영역으로, 생산과 투자 결정으로, 기술과 생태 전환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형식에 머물고, 민주주의 없는 노동은 자본의 지배 아래 파편화된다. 이것이 수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쉽게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국가주의로 후퇴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심화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 노동의 분절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

15. 전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는 동아시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동맹의 종말을 알렸으며,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장기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었다.¹⁰²⁾ 미국이 금융위기의 후유증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반면, ¹⁰³⁾ 중국은 자본의 과잉축적과 경제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공간적 해결(spatial fix)’을 모색하며 점점 더 팽창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¹⁰⁴⁾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에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우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지배력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붕괴가 곧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신자유주의의 장기적 쇠퇴 국면을 열어놓았으며, 반쯤 죽은 좀비와 같은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반쯤 죽은’ 신자유주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인터레그넘(interregnum)’, 즉 “낡은 것은 죽어가지만 새로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상태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Fraser 2023; Stahl 2019; Nilsen 2023; Sinha 2021).¹⁰⁵⁾ 이 인터레그넘 속에서 세계는 쇠퇴하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점차 노동대중의 희생 위에 지배 엘리트의 권력을 복원하려는 보다 노골적인 계급 프로젝트로 퇴행적으로 변형되고 있다. ¹⁰⁶⁾ 공정성, 민주주의, 참여, 굿 거버넌스라는 수사

102) Ho-fung Hung, *Clash of Empires: From “Chimerica” to the “New Co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https://doi.org/DOI:%252010.1017/9781108895897>.

103) Nancy Fraser, “From Progressive Neoliberalism to Trump—and Beyond,” *American Affairs* 1, no. 4 (2017).

104) Pádraig Carmody, Ian Taylor, and Tim Zajontz, “China’s Spatial Fix and ‘Debt Diplomacy’ in Africa: Constraining Belt or Road to Economic Transformation?,” *Canad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 Revue Canadienne Des Études Africaines* 56, no. 1 (2022): 59, <https://doi.org/10.1080/00083968.2020.1868014>.

105) Antonio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98), 276.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인터레그넘에 대한 논의는 Fraser, *Cannibal Capitalism: How Our System Is Devouring Democracy, Care, and the Planet and What We Can Do About It*, 20; Alf Gunvald Nilsen, “Emerging Power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outhern Interregnum*,” *Forum for Development Studies* 52, no. 2 (May 2025): 233–56; Subir Sinha, “‘Strong Leaders’, Authoritarian Populism and Indian Developmentalism: The Modi Moment in Historical Context,” *Geoforum* 124 (August 2021): 320–33; Rune Møller Stahl, “Ruling the Interregnum: Politics and Ideology in Nonhegemonic Times,” *Politics & Society* 47, no. 3 (2019): 338.

106) Ian Bruff, “The Rise of Authoritarian Neoliberalism,” *Rethinking Marxism* 26, no. 1 (January 2014): 13–29, <https://doi.org/10.1080/08935696.2013.843250>; Ian Bruff and Cemal Burak Tansel, “Authoritaria

가 점차 폐기되는 가운데, 그 공백을 권위주의가 채우고 있다. 이러한 보다 강압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형태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불완전한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살아남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경제성장과 국가 재건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노동계급의 보다 취약한 계층을 포섭하고, 이를 통해 계급을 가로지르는 정치적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속화하고 있다.¹⁰⁷⁾

16. 이러한 인터레그넘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노동 역설’에 대응해 온 끈질긴 탄력성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새롭게 등장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초기 투쟁은 종종 고립되었고, 기존 제도권 노동조직들의 연대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시아 노동자들은 “들꽃”과 같은 노동운동(wild-flower labour activism)-전통적 노동조합의 좁은 대표성 바깥에 놓인 주변화된 이들이 자율적·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저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위자성을 발휘해 왔다. 들꽃 노동저항은 공식·비공식 경제 전반, 농촌과 도시를 가로질러 등장한다. 이러한 저항은 탄압 속에서 들꽃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피어나기를 반복한다. 종종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순간에는 강력한 변혁적 잠재력을 지닌다. 비교적 개방된 사회에서부터 군사독재 체제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들꽃 노동운동의 특징은 바로 그 보편성과 회복력에 있다.¹⁰⁸⁾

n Neoliberalism: Trajectories of Knowledge Production and Praxis,” *Globalizations* 16, no. 3 (2019): 233–44.; Kanishka Jayasuriya, “Authoritarian Statism and the New Right in Asia’s Conservative Democraci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8, no. 4 (2018): 584–604; Cemal Burak Tansel, “Authoritarian Neoliberalism: Towards a New Research Agenda,” in *States of Discipline: Authoritarian Neoliberalism and the Contested Reproduction of Capitalist Order*, ed. Cemal Burak Tansel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7), 1–28.

107) Aim Sinpeng, *Opposing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The Yellow Shirts in Thailan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21); Thongchai Winichakul, “Toppling Democrac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8, no. 1 (February 2008): 11–37; Teri L. Caraway, “Labor’s Reversal of Fortune: Contentious Politics and Executive Aggrandizement in Indonesia,” *Social Movement Studies* 22, no. 5/6 (2023): 689–705; Marcus Mietzner, “Authoritarian Innovations in Indonesia: Electoral Narrowing, Identity Politics and Executive Illiberalism,” *Democratization* 27, no. 6 (August 2020): 1021–36; Edward Aspinall and Marcus and Mietzner, “Indonesia’s Democratic Paradox: Competitive Elections amidst Rising Illiberalism,”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55, no. 3 (September 2019): 295–317; Francisco A. Magno and Martin Josef E. Vivo, *Horizontal Accountability at Risk: Executive Aggrandizement in the Philippines* (East Asia Institute, 2023), <http://adnrnresearch.org/publications/list.php?at=view&idx=313>; Björn Dressel and Cristina Regina Bonoan, “Southeast Asia’s Troubling Elections: Duterte Versus the Rule of Law,” *see c.* 134, *Journal of Democracy* 30, no. 4 (2019): 134–48; Mark R. Thompson, “Pushback after Backsliding? Unconstrained Executive Aggrandizement in the Philippines versus Contested Military-Monarchical Rule in Thailand,” *Democratization* 28, no. 1 (January 2021): 124–41; Nyarwi Ahmad, “The Four Faces of Authoritarian Populism and Their Consequences on Journalistic Freedom: A Lesson Learnt From Indonesia’s 2019 Presidential Election,” *TRaNS: Trans-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10, no. 2 (2022): 189–201; Nicole Curato, “Flirting with Authoritarian Fantasies? Rodrigo Duterte and the New Terms of Philippine Populis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7, no. 1 (2017): 142–53; Nilsen, “Emerging Power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outhern Interregnum”; Inaya Rakhmani and Muni nggar Sri Saraswati, “Authoritarian Populism in Indonesia: The Role of the Political Campaign Industry in Engineering Consent and Coercion,”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40, no. 3 (2021): 436–60; Dae-oup Chang, “Authoritarian Neoliberalism in South Korea: Origins and Historical Conjunctions,” *Globalizations*, November 4, 2025, 4, <https://doi.org/10.1080/14747731.2025.2579338>.

108) Chang, Dae-oup. “Asian Labour Movements in the Age of Decaying Neoliberalism.” *Asian Labour Review*, 2022. <https://labourreview.org/challenges-to-the-asian-labour-movements/>.

동아시아의 들꽃 노동운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들의 조직화,¹⁰⁹⁾ 홍콩의 청년 시위와 노동조합 조직화,¹¹⁰⁾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¹¹¹⁾ 인도네시아의 거리 시위와 작업장 점거, 파업,¹¹²⁾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¹¹³⁾ 중국과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와일드캣 파업,¹¹⁴⁾ 대만과 중국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활동,¹¹⁵⁾ 그리고 태국의 빈민운동과 청년 반군부 시위 등이 권위주의 재부상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들꽃노동저항의 사례이다.¹¹⁶⁾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다양하다. 어떤 투쟁은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 109)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AMRC), *A Week That Shook Cambodia: The Hope, Anger and Despair of Cambodian Workers after the General Strike and Violent Crackdown* (2014), http://www.amrc.org.hk/sites/default/files/FFM-Cambodia-Report-022014-amrc_0.pdf; Dennis Arnold, "Civil Society, Political Society and Politics of Disorder in Cambodia," *Political Geography* 60 (2017): 23-33; Chang, "Transnational Labour Regimes and Neo-Liberal Development in Cambodia."; Anna Salmivaara, "New Governance of Labour Rights: The Perspective of Cambodian Garment Workers' Struggles," *Globalizations* 15, no. 3 (2018): 329-46.
- 110) Loong Yu Au, *Hong Kong in Revolt: The Protest Movement and the Future of China* (London: Pluto Press, 2020).
- 111) Dennis Arnold and Stephen Campbell, "Labour Regime Transformation in Myanmar: Constitutive Processes of Contestation," *Development and Change* 48, no. 4 (2017); Stephen Campbell, "In Post-Coup Myanmar, Workers Assert Workplace Democracy amid Suspension of Electoral Rule," 18 July 2022, *Asian Labour Review*, July 18, 2022, <https://labourreview.org/in-post-coup-myanmar-workers-assert-workplace-democracy-amid-suspension-of-electoral-rule/>; Cheria Ma and Maung Ko, *Against All Odds: Workers' Resistance in Post-Coup Myanmar*, Issue Paper No. 42 (Jeonju, Korea: JISEA, 2025), 3, https://jiseas.jbnu.ac.kr/CrossEditor/binary/files/000018/JISEAS_Vol42_final.pdf.
- 112) Abu Mufakhir, "Alliances of Labour Unions as the Backbone of General Strikes in Indonesia," in *Resistance on the Continent of Labour: Strategies and Initiatives of Labour Organizing in Asia*, ed. Panimbang, Fahmi (Hong Kong: Asia Monitor Resource Centre, 2017); Fahmi Panimbang and Abu Mufakhir, "Labour Strikes in Post-Authoritarian Indonesia, 1998-2013," in *Workers' Movements and Strik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Global Perspective*, ed. Nowak, Jörg, Madhumita Dutta, and Peter Birke (London: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2018); Teri L. Caraway and Michele Ford, *Labor and Politics in Indone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Byoung-Hoon Lee, "Worker Militancy at the Margins: Struggles of Non-Regular Workers in South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5, no. 1 (2016): 1-37.
- 113) Aelim Yun, "Transportation Workers' Mobilization against the Gig Economy: Korea," in *Platform Labour and Global Logistics*, ed. Immanuel Ness (London: Routledge, 2023), 153-66; Kwang-Yeong Shin, "Globalisation and the Working Class in South Korea: Contestation, Fragmentation and Renewal,"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0, no. 2 (May 2010): 211-29.
- 114) Joe Buckley, *Vietnamese Labour Militancy: Capital-Labour Antagonisms and Self-Organised Struggles* (London: Routledge, 2022); Angie Tran, "Vietnamese Textile and Garment Industry in the Global Supply Chain: State Strategies and Workers' Responses," *Institutions and Economies* 4, no. 3 (October 2012): 123-50; Mark Anner and Xiangmin Liu, "Harmonious Unions and Rebellious Workers: A Study of Wildcat Strikes in Vietnam," *ILR Review* 69, no. 1 (2016): 3-28; Quynh Chi Do, "The Regional Coordination of Strikes and the Challenge for Union Reform in Vietnam," *Development and Change* 48, no. 5 (2017): 1052-68; ITUC/GUF Hong Kong Liaison Office,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Strike in Honda and the Auto Parts Industry in China* (2010), 20-22, <https://intercoll.net/A-Political-Economic-Analysis-of-the-Strike-in-Honda-and-the-auto-parts>; Pak Nang Leung and Ngai Pun, "The Radicalisation of the New Chinese Working Class: A Case Study of Collective Action in the Gemstone Industry," *Third World Quarterly* 30, no. 3 (April 2009).
- 115) Ming-sho Ho, "From Unionism to Youth Activism: Taiwan's Politics of Working Hours," *China Information* 34, no. 3 (November 2020); Chuang, "Three Autumn Revolts: Breaking the Ice on China's 'Anti-Lockdown Movement'; Chuang, January 19, 2023, <https://chuangcn.org/2023/01/three-autumn-revolt-s/>; Eli Friedman, "Foxconn's Great Escape," *Asian Labour Review*, 2022, <https://labourreview.org/foxconn-great-escape/>; Simon Han and Jessica Song, "The Return of Strikes in China," *Features*, *Asian Labour Review*, June 4, 2024, <https://labourreview.org/strike-wave-china/>.
- 116) Chris Baker, "Thailand's Assembly of the Poor: Background, Drama, Reaction," *South East Asia Research* 8, no. 1 (2000): 5-29; Jim Glassman, "From Seattle (and Ubon) to Bangkok: The Scales of

어떤 투쟁은 기존 노동조합의 무관심 속에서 동력을 잃는다. 반면 일부는 광범위한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의 지원을 얻으면서 새로운 힘을 획득하기도 한다. 형태와 결과는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하다. 그것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자발적 조직화,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가 결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들꽃 노동운동은 분산되어 있고 자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때 동아시아의 불안정 노동계급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사회적 힘이 될 수 있다.

17. 이 점에서 동아시아 노동운동의 과거는 단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전략의 자원이다. 동아시아의 반식민 투쟁, 권위주의 국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민주화 투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과 조직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투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화, 청년 프레카리아트의 거리정치, 그리고 '들꽃'처럼 피어나는 비제도적 노동저항은 모두 민주주의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역사적 자원이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북반구 노동운동의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동아시아 노동이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저항하고 조직하고 연대해 왔는가이다. 제도화된 단체교섭만이 노동정치의 정상적 형태가 아니다. 와일드캣 파업, 점거, 거리시위, 비공식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공동체, 여성노동자들의 돌봄과 생존의 정치, 청년들의 플랫폼 저항 또한 오늘날 자본주의 노동이 만들어내는 현실적 투쟁 형태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때로 산발적이고 취약하며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취약성과 반복성 속에서 오늘날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이 형성된다. 들꽃 노동운동은 조직화 되어있지 않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이 포괄하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

18. 더 나은 민주주의를 희망하는 동아시아 노동운동이 이 전략자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은 스스로 유럽중심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변부주의이다. 주변부주의는 아시아 노동을 항상 부족한 것,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서구를 따라잡아야 할 것으로 만든다. 이 관점 속에서 아시아 노동운동은 스스로의 역사와 경험에서 전략을 찾지 못하고, 늘 다른 곳의 완성된 모델을 수입하려 한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노동이 아시아 노동이라면, 아시아 노동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이다. 아시아 노동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글로벌 자본주의가 실제로 조직하고 착취하는 노동의 정상적 형태이다. 불안정하고, 이주하며, 비공식적이고, 분절된 노동이야말로 오늘날 세계자본주의가 가장 광범하게 만들어내는 노동이다.

19.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은 단지 학술적 논쟁이 아니고 전략의 문제이다. 어떤 운동도 자신이 이해하는 역사보다 더 멀리 나아가기 어렵다. 우리가 동아시아 노동을 과거의 잔재로 이해한다면, 동아시아 노동운동과 민주주의의 미래 역시 서구의 과거를 따라잡는 데 머물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노동을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동아시아 노동운동은 자신을 민주주의의

Resistance to Corporate Globaliz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0, no. 5 (2002): 513-33; Bruce Missingham, “Forging Solidarity and Identity in the Assembly of the Poor: From Local Struggles to a National Social Movement in Thailand,” Asian Studies Review 27, no. 3 (2003): 317-40; Akanit Horatanakun, “The Network Origin of Thailand’s Youth Movement,” Democratization 31, no. 3 (April 2024): 531-50; Duncan McCargo, “Disruptors’ Dilemma? Thailand’s 2020 Gen Z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 no. 2 (April 2021): 175-91; Wichuta Teeratanabodee, “Thailand’s 2020-2021 Pro-Democracy Protests: Diversity, Conflict, and Solidarit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55, no. 1 (January 2025): 3-27.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주체로 상상할 수 있다. 역사를 다시 써야 전략을 다시 쓸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의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서구 노동운동과 민주주의를 끝없이 공부할 시간에 동아시아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과거를 다시 읽어야 한다. 이는 서구의 경험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서구를 보편적 모델로 삼고 동아시아를 그 결핍된 복사본으로 보는 인식론이다. 노동의 대륙 동아시아에서 세계자본주의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한다.

20. 그리고 그 길은 동아시아 민주노동운동과의 연대 없이는 열릴 수 없다. 동아시아 민주노동운동과 연대한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 지지를 보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다. 캄보디아 의류 노동자의 임금투쟁, 중국과 베트남의 와일드캣 파업,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화, 홍콩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봉기, 인도네시아의 파업과 태국의 청년운동은 모두 별개의 지역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세계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노동의 조건에 맞서 민주주의를 다시 정의하려는 투쟁이다. 결국 동아시아 노동을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세계 최대의 노동의 대륙에서 노동자들이 만들어 온 투쟁과 연대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과거를 다시 쓰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다시 여는 일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서구의 완성된 제도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다. 동아시아 노동은 더 이상 유럽과 북미의 거울에 비친 결핍의 이미지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자본주의의 현재를 떠받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너머의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역사적 힘이다.

[닫는 발언 closing speech]

총체적 위기 국면의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 : 연속혁명의 관점

정성진(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디커플링’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오늘날 자본주의는 경제위기, 지정학적 위기, 기후위기,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등 총체적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세기말 옛소련 붕괴 이후 만연했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라던 일부의 기대는 산산조각났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영원할 것 같았던 공존은 파국을 맞이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디커플링(decoupling)’되고 있다. 21세기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지닌 내적 논리, 즉 이윤을 저하 위기와 물질대사 균열, 제국주의적 경쟁(경제적 및 정치군사적 경쟁)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다. 한계에 봉착한 자본축적은 기후위기와 중첩되면서 세계는 자원과 에너지가 빈번하게 고갈되는 ‘항구적 결핍 경제’(사이토 고헤이)로 진입하고 있다. 총체적 다중 위기 국면에서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살 곳과 식량을 잃은 수억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하는 가운데, 글로벌 자본가 계급은 자원을 독점하고 자본축적을 위해 대중을 배제하는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위기 해결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같은 극소수 테크 억만장자들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들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선민사상에 경도되어 있다. 알고리즘 및 데이터를 통해 대중을 감시·통제하는 ‘테크노 파시즘’과 ‘에코 파시즘’(‘기후 모택동주의’)이 도처에서 발호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 국면에서 민주주의와 대중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의 신화에서 벗어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기만성에 정면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드(E. M. Wood)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는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경제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으로 분리되면서, ‘정치적 영역’에서는 ‘1인 1표’의 논리가 작동하여 ‘민주주의의 원리가 형식적으로나마 작동하는 반면, ‘경제적 영역’의 표면에서는 ‘1원 1표’의 논리가 성립하지만, 그 이면, 심층에서는 자본의 노동 착취 및 이윤과 축적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전제(despotism)가 관철된다. 자본가 계급에게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권력과 이윤 축적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이므로, 노동자 대중이 충분히 통제되거나 자본주의의 규칙 내로 흡수되지 않는 한 자본가계급은 온전한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오직 ‘정치적 영역’에서만, 즉 정치적 민주주의로만, 그것도 실은 ‘과두제’일 뿐인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와 한정된다. 정작 노동자 대중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터, 투자, 자원의 배분 같은 ‘경제적 영역’의 주요 결정은 민주적 통제 밖의 영역으로 밀려나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영역'은 '렌트 자본주의'(사사키 류지)라는 새로운 수탈 체제가 지배하면서 민주주의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 이윤율 저하 위기에 직면한 거대 테크 자본은 인류의 공동 지식과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디지털 커먼즈(common)'를 인클로저·독점하고, 대중을 '디지털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시켜 막대한 렌트를 수탈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 국면의 자본주의, '렌트 자본주의', '테크노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상대적 자율성'의 허울을 벗어 던지고 자본의 주구가 되었다(트럼프, 이재명 정부 등). 자본주의에서 주류 정당들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거대 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다. 국가는 이제 거대 테크 자본의 직할령이 되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대중이 부유세 등 자본의 이윤율을 위협하는 민주적 요구를 제기할 때면 국가는 주저 없이 파시즘으로 돌아선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스트자본주의 대안

총체적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계급의 이윤과 기득권 유지에 대해 민주주의가 장애가 되면서 파시즘이 전지구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파시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주의 틀 내에서의 개혁('좋은 자본주의')이나 단계적 혁명 (1단계: 민주주의 혁명->2단계: 사회주의 혁명)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 더 이상 '그린 뉴딜'이나 규제 중심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좋은 자본주의')의 실험으로는 '항구적 결핍 경제'로부터 오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심화되고 있는 파시즘과 기후위기가 '제3차 세계대전'과 기후붕괴라는 야만, 아마게돈으로 치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비상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벤야민). 대안은 '어소시에이션'에 기반하여 민중(demos)의 권력(kratos)을 경제 전반으로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는 '관계자외 출입금지'의 표지 앞에서, 즉 '일터의 문 앞'에서 멈추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 한계를 전면적으로 타파하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강제에서 인간의 삶을 분리해 내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투자의 사회화', '생태적 참여계획 경제' 등, 포스트자본주의의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표소에만 갇혀 있던 민주주의를 일터와 생존의 현장으로 끌어내는 대중 운동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쟁은, 그 시작이 비록 자동차 진입 금지나 화석연료 채굴 반대 같은 방어적 환경 투쟁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소유권과 이윤 논리라는 장벽을 전복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즉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중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이윤 논리 자체를 철폐하고 포스트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이행기 요구(transitional demands)'가 된다(트로츠키). 자본의 이동과 생태 재앙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투쟁은 전 세계 대중의 국제주의적 연대 속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 21세기 인류가 '에코파시즘', '테크노 파시즘', '제3차 세계대전', '기후붕괴'라는 야만과 아마게돈을 저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스트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연속혁명'은 필수적이다.

'부르주아 혁명'과 '2단계 혁명'의 허구

이와 관련하여 '부르주아 혁명'의 성격과 위상을 둘러싼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과 스탈린주의 2단계 혁명론 간의 논쟁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스탈린주의의 주요 요소의 하나는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나라가 사회주의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진보적' 자본가 계급('민족자본가 계급' 등)이 주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2단계 혁명론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부르주아지는 노동자 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두려워하여 언제나 민주주의 혁명의 동학에 제동을 걸었다. 이른바 '부르주아 혁명'의 본질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축적의 조건을 확립하는 것일 뿐이다. 즉 '부르주아 혁명'은 통상 주장되듯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본축적이 요청하는 국가형태를 수립하는 과정이었다(N. Davidson). 비스마르크의 독일이나 메이지 유신처럼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와 친화적이었다. 부르주아지가 주도했다는 기존의 '부르주아 혁명론', 또 이와 한 세트로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혹은 '선순환'을 전제했던 스탈린주의 2단계 혁명론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허구일 뿐이다. 반면, 노동자 대중은 민주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와 함께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과제를 결합하여 연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본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20세기 이후 혁명운동사에서 그 보편적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투쟁: 연속혁명론적 관점

1987년 6월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2017년 '촛불 혁명', 2024-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세 번의 거대한 민주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오히려 '헬조선'으로 치달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그 민주주의 투쟁들이 민주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반단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연속혁명론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노동자 대중은 독재를 무너뜨리거나 쿠데타를 저지한 뒤 스스로 권력 기구를 수립하는 길로 연속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자기 제한' 전술(2단계 혁명론)을 반복했다. 실제로 지난 세기 이후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상호 간의 경쟁 대립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 2단계 혁명론을 공유했다. 예컨대 1987년 국면에서 경쟁했던 'NL'과 'PD'는 모두 모종의 '민주주의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에 앞선 1단계 혁명으로 설정했다. 'NL'이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한 반면, 'PD'는 '반제반독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했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열망은 자본의 소유권과 이윤 논리와 충돌하는 반자본주의 투쟁과 조치들로 '성장 전화'하지 못하고 매번 부르주아 선거판으로 흡수되어 혁명의 동력을 상실했다. 셋째, 집권한 '민주정부' 및 '진보좌파' 대다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 또는 '선순환'의 허구에 미혹되거나, 혹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착시로 인해, '경제적 영역', 즉 자본의 전제가 관철되는 잉여가치의 착취 영역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2024-25년 '빛의 혁명' 덕분에 집권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 현 정부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같은 문재인 정부의 케인스주의적 개혁 정책이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도 싸구려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그 대신 '주식 자본주의', '렌트 자본주의', '테크노 자본주의' 등 자본의 이윤 논리 그 자체가 국정 과제로 전면화되고 있다. 현 정부의 '주식 자본주의'는 자본의 논리 자체인 '1원 1표'의 논리와 '물상화' '형상화'의 메커니즘(사사키 류지)을 자본가계급은 물론 전 국민 대중의 '일상의식', '상식'으로 내면화하면서 반자본주의·포스트자본주의의 충동을 무의식의 유토피아로 밀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극한으로 격화시켜 경제위기와 극단적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을 일상화하면서 '마지막 비상구'마저 닫혀진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붕괴, 각자도생과 극우 포퓰리즘, 파시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시나리오에 반자본주의 혁명과 포스트자본주의로 연속적으로 '성장 전화'하는 노동자 대중의 민주주의 투쟁의 고양에 의해 저지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버릴 것인지, 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자신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버릴 것인지를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이 후자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에서 "나의 인생 지키기" 위해서는(고은강), 달리 말해, 이윤추구와 약육강식, 물상화가 극한으로 치달은 자본주의에서 진정으로 인간답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와 "공정"의 게임룰에 따라 각자도생하기보다,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근본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2030 세대'가 극우화되고 있다는 오늘 한국에서 이것은 '구좌파'의 망상일 뿐일까? '밀레니얼 사회주의'(샌더스, 코빈 등)에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Gen-Z 사회주의'(맘다니 등) 등은 '마르크스의 유령'이 오히려 21세기 야만과 아마게돈에 대한 유력한 현실적 대안으로 환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부 라운드 테이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와 계급, 차별, 공정
의 프레임

[토론1]

쿠팡물류센터 현장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고민하기

정성용(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

노동운동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 교육자료 및 교재들에서.

“현장의 주인인 노동자”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 노동계급”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현장과 사회의 주인”

○ 하지만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현장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음. 이곳은 직장이 아니라 알바. 나는 여기를 그저 지나가는 사람. 여기 물류바닥 사람과 나는 다름. ‘나는 물류인, 물류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규직 관리자부터일 것으로 보임. 물류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경우. 물류센터 관리자로 회사를 여러 이직하는 경우. 현장노동자들은 그냥 일용직 노동자. 잡부. 막노동꾼. (그러나 건설일은 너무 힘든.)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공단 (파견·일용직) 노동, 식당 노동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그렇기에 현장에 대한 주인의식이 약함. 이곳을 직장으로 생각해야 이곳을 바꾸고 싶어지고, 그래야 노동조합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 임금은 적어도 됨. 원래 그런 곳인 줄 알고 왔음. 그런데 휴게시간 없는 것, 에어컨 없는 것은 너무함. 그리고 자식빨인 관리자들에게 욕먹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음.

- 임금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함. 당장 일할 수 있다는 점, 오늘 일하면 내일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일당을 떼일 걱정 없다는 점에 안도함. (자신이 다닐 수 있거나 다녔던 현장들은 이런 일이 빈번히 있다는 것)

- 휴게시간·에어컨 없음은 너무나 상식 밖의 상황이라, 그리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불만이 쌓이고 공감대가 모이는 지점.

- ‘모욕감’, ‘인간적 모멸’. 때로는 말 한마디이긴 하지만 인생을 걸게 되는 전부가 되기도 함. 자식빨인 관리자에게 욕먹고, 지적받고 모멸적 언사를 듣는 것이 자주 그러한 지점이 됨. 텃세 걱정 없어서,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하면 되니깐. 막상 쿠팡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면 또 그렇지 않음. 극심한 관리자의 통제, 그 통제하에서 형성해야 하는 동료 관계라는 것이 있음. 이 동료 관계도 일용직/계약직으로 파편화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형성되기 어려움. 결국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이직의 상황 자주 발생.

○ 휴대폰 뺀 것. 군대식 통제. 처음에는 너무하다고 생각. 그러나 또 적응이 됨. 그러다가

휴대폰 반입시키면 일용직 노동자들 일 안 한다고 걱정. 안 그래도 힘든데 무겁고 걸리적거린다고 얘기함. “쿠팡은 원래 그래.”

○ 폭염 시기 일용직 인센티브. 쿠팡은 일하기 힘든 폭여 시기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적게는 일당 3만원, 많게는 일당 5~7만 원을 지급하며 출근자를 모집함. 7만 원은 최저임금 받는 일용직 노동자 일당 8~9만 원의 거의 70~80% 되는 수준. 일당 2배를 주는 것과 비슷. 그런데 문제가 있음.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인 계약직 노동자는, 그리고 같은 날 출근하게 되어있는 계약직 노동자는 어떤 인센티브도 없음. 심지어 일용직 노동자 중 먼저 회사에 먼저 출근 의사를 밝힌 노동자는 3만 원, 늦게 출근 의사를 밝힌 노동자는 5만 원인 상황도 자주 발생. 일용직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출근 의사를 밝혀야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그러다가 출근 자체를 못하게 되어 일당을 홀라당 날리는 상황도 각오해야 함.

이에 대한 계약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2년 넘게 누적되어 왔음. 주로 이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 “단기들(일용직 노동자)은 인센티브 받고 출근해서 일도 지지로도 못하고, 농땡이만 피우다 간다. 옆에서 개네들 똥도 치우면서 더 고생하는 우리는 인센티브가 단 1만 원도 없다. 노조가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노조는 주로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 에어컨 설치를 중심을 폭염 대응을 해왔음. 계약직 노동자들 폭염 시기 인센티브는 사라진 지 오래.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수당이나 임금인상 등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음.

“인센티브 차별 철폐 or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인센티브를”. 계약직 노동자들은 인센티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차별’ 또는 ‘역차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자주 있음. “우리를 잡은 물고기 취급한다.”

○ 비정규직 현장, 물류·플랫폼 현장의 여러 단면들.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 여전히 유효한 표현. ‘뭉치면 주인 되고 흩어지면 노예 된다’ 역시 여전히 유효. 그래서 민주노조 운동이 있었고, 민주노총이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운동이 있었던 것.

- 민주노조를 통하지 않고는 산업 현장, 공장, 물류센터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 그렇게 노동운동은 소위 미조직 사업장의 신규 노조 설립을 그 해결책으로 삼아왔던 것. 이것만이 유일한 답인가.

- 조합원에 한정하지 않는 노사협의회 방식, 산보위 방식. 조직된 노조를 패싱하고 미조직 노동자를 노동부가 직접 조직하겠다는 각종 조직들.(상담센터 등) 민주노조는 이들에 대항하여 ‘진정한 현장 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정체성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조차 잘하고 있는가. ‘평의회, 평의회 민주주의’ 이조차도 투쟁을 통해 건설된다는 점에서 현장 내 투쟁 없는 민주주의 확장은 허구라고도 단언할 수 있지 않을까.

- 선거. 노조 조합원 확대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음. 75만 부와 4만 부의 공보물에 삽입된 QR 코드. 제도권 선거에서 공보물이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한정됨. 지방선거의 특징. 실제 드러난 효과도 없음. 노조 선전물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선거 공보물을 읽는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쿠팡노동자 5만~6만 명 모두에게 전달되는 선전물이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을까. 한 지역에 밀집하여 살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지방선거를 통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목표는 선거운동 과정과 쉬이 화해되지 않음을 깨달았음. 그렇다고 공중전의 힘으로 쿠팡 자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음. 차라리 서울시장 선거 TV토론에서 권영국 정의당 후보가 한 말씀 더 해주시는 것이 더 큰 힘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 민주노조 건설이 아니고서는 현장 민주주의의 실현은 어려움. 선거 정치도 한계가 큼.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특성이지 않을까) 그러나 미조직된 불안정노동의 영역에서 민주노조 건설은 가뭄에 콩, 하늘에 별따기 같은 상황. 그 와중에 조직된 민주노총은 보수화·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

○ 나가며

-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범위 확대,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현수막에 대한 댓글.

 댓글



김 [redacted] 1주
적정보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일을 안하면 됩니다

답글 달기 



정성용 · 1주
그일을 안하면 어떻게 되지요?

답글 달기 



김 [redacted] 1주
정성용 자신이 원하는 보수를 주는 곳에 취직 해야겠지요.
능력이 된다면 :
보수는 적정이라는 명목하에 남 받는 만큼 받고 싶고 능력은 안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토론2]

집 문제를 통해 본 불평등, 민주주의, 공정 프레임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장면1. 공정 프레임의 활용 방식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여야 정치권은 소위 'LH 방지 5법¹¹⁷⁾'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이 마지못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은 딱 거기까지였다.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불공정 투기를 제약하는 것까지가, 그들의 최후 저지선이자 새로운 전진을 위한 출발선이 되었다.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며 선 긋고, 이 상황을 주택문제에 대한 '공공 실패'로 규정했다. 실패한 공공의 자리에는, '공정경쟁 시장'이라는 '민간'을 대치시켰고, '공공'의 '불공정 투기' 방지를 저지선으로 해, '민간'의 '공정한 투자'라는, 사적 투기를 사수했다. 한 달 후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불공정' 투기 문제의 해법으로 민간 만능을 기치로 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전면화하며 당선됐다. 민주당도 패배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짚으며, 불공정 투기를 철저히 근절하되 민간의 공정한 투자를 보장하겠다는 식의 엉뚱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2030의 분노에 대한 화답으로 'LTV·DTI 90%까지 풀자'는 주장까지 당 대표 후보에게서 나왔다. 불공정에 분노하는 20·30세대에게, 빚으로 만든 사다리를 놔줘서라도 공정한 투기시장으로의 진입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장면2. 자본주의 부동산 체제의 민주주의 수호

12.3 내란이 있고 5일 후인 2025년 12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1회만 보장된 세입자의 갱신권을 확대하는 내용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었다. 그해 11월 말 진보당 윤종오의원 대표 발의로 민주당 5명의 의원 등 10명이 동의해 발의된 법안이었다. 발의된 법안이 불과 10여 일 만에 철회된 이유는, 임대인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 여론으로 공동발의 의원 1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서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임대인 단체들은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의되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계엄이 터지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에 대응했다고 했다. 그렇게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요구는, 임대인들의 재산권 수호를 수용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손쉽게 철회되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딱 거기까지였는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권력은 바뀌되, 부동산 체제를 비롯한 내란 이전의 질서는 철저히 수호하는 것까지가,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주의 헌정 수호였다.

117) 공공주택특별법, LH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장면3. 공정과 민주주의 그리고 불평등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거래가 신고가 기준 최고가 주택의 순위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성수동) 290억, 나인원한남(용산) 250억, 한남더힐(용산) 190억 원 순이다. 집 한 채에 200억 원 대에 거래된 용산에는 가난한 1인 가구의 마지막 잠자리인 쪽방촌, 전국 최대규모인 동자동 쪽방촌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 그것도 용산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완벽한 계급적 분리와 공간의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5년여 전(2021.2.5.) 정부는 동자동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구 내 임시이주와 재정착을 보장하는 선이주 선순환의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다. 한 평 남짓 쪽방에 서울 아파트 평당 월세보다 3~4배 비싼 방세를 받는 빈곤 비즈니스가 만연한 이곳의 공공주택 발표에, 소유주들은 “내 무덤에 공공주택 지어라”, ‘투기세력 LH는, 자격없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공공개발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하고 자격 없는 공공을 대신해, 민간 소유주들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주장에, 5년이 넘도록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멈춰있다. 문재인 정권 때 발표돼 윤석열에서 이재명 정권으로까지 이어졌지만, 매번 정부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외면할 수 없는 게 공정이고 민주주의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지위를 독점한 소유주들은 정작 동자동에 살지 않는 투기적 외지 소유주들이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이가 주민의 지위를 독점하는 사이, 그곳에 살면서 골목을 청소하고 꽃을 심으면 가꿔온 쪽방 주민들은 ‘주민’에서 삭제된다. 동자동 뿐 아니라 각종 도시개발 영역에서 주요 결정은 절차적 민주주의인 공청회, 주민동의, 조합원총회 형식으로 완성되지만, 그곳에 살고있는 이들의 다수인 세입자들은 철저히 배제된다. 소유자 민주주의다.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정담론을 통해 그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왔다.

“닥치고 공급?”, 불평등, 계급관계의 은폐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몇 해 전 온라인을 달군 서초구 반포동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더 팰리스73)의 분양광고 카피는, 초부자를 타겟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노골화했다.

주택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거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넘어, 불평등이 생산되고, 정당화되며, 재생산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 주택체제에서 집은 ‘사는 곳’인 사용가치보다 ‘사는 것’인 교환가치를 우위에 둔다. ‘사는 곳’인 집이, ‘사는 것’인 부동산으로 거래되면서, 주거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장에서의 개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으로 여겨진다. ‘사는 것’이 된 집은 공인중개사무소 유리벽에 붙은 A4용지 설명으로 진열된 부동산 상품으로 전시되어 소비를 유혹하고, 주식 거래 차트처럼 주간단위로 발표되는 주택가격동향은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불안을 부추긴다. 이 체제에서 집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상품이고, 자산기반 복지로서의 노후보장 수단이자 생존전략이며, 가족 간 자산 이전의 매개가 되고, 금융자산의 담보로 기능한다.

이처럼 집은 한국사회 불평등 심화의 핵심 조건이다. 소득불평등이 완화하는 기간에도 자산불평등이 심화하였는데, 순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주요 원인이 자가(아파트) 보유 가구와 무주택가구 사이의 순자산 격차인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또한, 주택문제는 현재의 주거불안과 불평등에 그치지 않고 재생산되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부모가 주택자산을 보유한 청년은 증여, 상속, 전세자금 지원,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출 수 있지만 부모세대의 자산 지원이 어려운 청년은 같은 학력과 소득을 갖고 있어도 평생 집을 소유할 수 없는 렌트 제너레이션(Rent Generation)으로 머물거나 더 주변화된 지역으로 밀려나가거나 더 높은 부채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영끌하는 2030’이라는 언론 보도는 공정 프레임으로 집 문제로 절망하는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것처럼 사용했지만, ‘지(하)·옥(탑)·고(시원)’ 거주 청년들을 하루아침에 ‘영끌’해 집을 구매하려는 집단으로 둔갑시키며, 영끌하는 2030 배후에 86세대가 있다는 부의 이전에 대한 현실과 투기를 감추는 용어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주의 주택체제에서 생산되고 정당화되며 재생산되는 계급 불평등, 세대 불평등, 공간적 불평등은, 주택문제의 해법이 ‘공급’이라는 주문으로 매번 은폐된다. 6.3지방선거 당시 정원오세훈도, 최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닥치고 공급”이라며 공급만능론의 주문을 소리 높였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언론도, 서울 아파트값이, 우리가 겪는 ‘집 문제’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며 공급만능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택문제도 시장 경제학의 수요·공급 법칙으로 설명하며 높은 수요를 만족시킬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닥치고 공급’은 공급이 모든 주택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처럼 생각하게 하고, 공급부족이 주택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마법의 주문이 되었다. 이러한 공급이 해법이라는 시장주의 주택문제에 대한 설명은 주택을 매개로 심화하는 불평등과 계급관계를 은폐한다.

소유하지 않아도, 살 만한 집

공급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해 줌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자본주의 주택전략의 결과는 폭력적인 강제퇴거와 주거 불평등의 심화였다. 대출 확대와 연평균 50만 호 내외의 주택공급을 지속해 왔지만, 자가점유율은 1980년과 같다. 공급을 통한 자가소유 촉진 정책으로 소유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 해도, 모든 것이 내 집 마련으로 수렴되는 체제에서는 역설적으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집값을 내리기’ 위한 정책은 중요하지만, 집값을 내린다고 해도 집은 여전히 비싸고, 세입자의 다수인 월세 세입자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은 소유에 닿을 수 없다. 집값을 낮춰 소유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값은 오른다. 공급과 대출로 자가소유를 지원하는 자본주의 주택 해법은 주택위기를 더욱 키울 뿐이다.

핵심은 무엇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떤 소유구조로 공급하는가이다.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도 그것이 투기자산으로 흡수된다면 주택문제는 반복될 뿐이다.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생겨도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구조에서 주거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이전된 것이다. 공공택지를 민간분양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도 공공이 만든 토지가치가 사적 자산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현시기 주택문제는 ‘주택 수(공급)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산된 토지와 주택 가치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집, 우리에게 필요한 집은, 누군가의 자산으로 판매되고 소유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다.

[토론3]

‘유혹하는’ 자본주의 의료체제의 모순과 위기

김창엽((사)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보건의료와 돌봄의 불평등은 어떤 기준으로든 한국 사회와 인민에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사회적 고통은 다른 무엇보다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근본 구조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의료를 둘러싼 정치적, 정책적,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거의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적절한 의사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의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어때야 하는지, 노동자와 농민은 이해 당사자이면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권력이 없다.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권력과 의 관계 또한 지극히 불평등하다.

보건의료와 돌봄이 국가권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국가권력의 통치(성)라는 관점에서 평등과 권리 보장이라는 원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치의 물적 토대로서의 건강-보건의료-돌봄의 사회적 실천은 거의 전면적으로 자본제적 건강-보건의료-돌봄체제에 의존한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 또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실재하는 국가 권력을 고려하면, 국가권력과 자본주의체제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

가령, 국가가 응급의료체계를 촘촘하게 갖추려는(또는 그렇게 보이려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통치의 원리, 그리고 지역에 무관하게 권리를 보장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국가권력의 동기에 기초한다. 그렇지만, 그 응급의료체제는 국가권력이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않고 시장원리로 작동하는 자본제적 의료체제 그리고 응급의료체제이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권력의 정책 또한 자본제적 의료체제에 의존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자본)의 운동이 드러나게 되는 틈이자 모순이다.

보건의료, 예를 들어 모순이 극단적 형태로 드러나는 지역 보건의료와 돌봄 문제를 생각하면, 총체성(totality) 관점에서 국가와 자본주의 모두 ‘방법으로서의 주변부’를 논의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국가 통치의 주변부 영역일수록 경제의 우선성이 관철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의료가 경제적으로는 중심부라는 의미는 아니다).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경제의 양적 측면에서 의료체계가 또한 경제체계라는 것은 자명하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5% 수준으로, 다른 고소득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 규모의 팽창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GDP의 10% 가까이를 소비(생산)하는 어떤 산업을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다른 인식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보건의료체계와 제도를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모든 의료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실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사 인력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도 달라진다. 경제체계로서의 의료체계에서 경제 활동, 즉 생산과 소비의 주체는 국가권력의 정책이나 행정으로 규정하는 의료와 그 체계의 범위를 넘는다. 예를 들어, 의사 인력은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를 제공하는 인력(의료자원)일 뿐 아니라, 또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얻거나 임금을 받는 자본주의체제의 경제 주체이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노동을 사회화한 핵심 제도인 동시에, 수많은 일자리와 이윤을 산출하는 (국가가 조성한) 시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본제적 의료체제(부분)은 총체성으로서의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와 공동-결정, 공동-진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공영의료체계를 ‘자본주의의 섬’으로 부르는 것은 오류다. 지금 글로벌 자본주의는 더 큰 이윤을 찾아 이동(운동)하며, 그 결과가 이른바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등의 자본 축적 체제이다. 이들 자본은 의료체계 관점에서는 지식, 기술, 장비와 물품, 약품 등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려 한다. 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약품, 연구개발 투자와 금융,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실손보험, 의사들의 필수 전문과목 기피와 쏠림 등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공동으로 진화, 결정한다.

이런 구조 안에서 경제 주체로서의 의료기관(의료자본)은 이윤 최대화를 위해 다른 무엇도 아닌 경제적 합리성에 맞추어 자신을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자본주의 시장을 통한 생산 경쟁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합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의 생산자 또한 생산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려 노력한다. 문제는 일반적인 생산 전략, 즉 비용, 품질과 차별화, 유연성 등에서의 경쟁이 쉽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도 한국 병원에서 나타나는 흔히 나타나는 노동 문제, 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강화, 낮은 임금, 비정규 노동 등은 가장 원초적인 자본 축적 기제가 빚어내는 현상이다. 전공의와 간호사가 병원의 비용과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인 한, 병원이 노동을 갈아 넣을 동기는 차고 넘친다.

의료의 생산 경쟁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양을 늘리려는 경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의료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혁신’은 필요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 잠재적 수요 또는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이기 쉽다. 개별 병원의 규모를 늘리고 분원을 더 운영함으로써 환자를 늘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건강검진과 예방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의료의 대상이 아니던 서비스나 기술을 의료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품질과 차별성 또한 같은 차원의 원리이자 상품의 특성이다. 실제적인 품질보다는 신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을 두고 경쟁한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암병원 설립과 증설,分院 설치, ‘왓슨’과 같은 신기술 도입 등을 모두 이런 자본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의료산업과 병원자본의 경제적 가상과 달리, 주로 노동에 의존해 가치를 창출하는 의료자본은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경제 주체와 비교해 자본 축적에 불리하다. 지금까지 주로 생산량 증가에 의존한 축적체제가 향후 자체 모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 또는 특정 인구 집단이 줄면서 생기는 수요 감소는 한국 의료자본의 자본축적을 결정적으로 제약할 것이다. 앞서 주로 병원을 중심으로 자본 또는 자본 축적의 논리를 설명했지

만, 개인 의사와 고용 의사, 개원한 의사, 병원과 의원 등의 기관이 자본제적 의료체제라는 축적 체제에 속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결국, 의사 수나 진료비 수가를 둘러싼 의료권력의 반발은 근본적으로는 자본제적 의료체제의 모순이 격화되면서(또는 이를 예상하면서) 촉발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출로 이해해야 한다.

자본제적 의료체제라는 인식의 부재는 단지 이론적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권력의 통치, 정부의 정책, 사회권력의 대응, 그리고 변혁 운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의사 권력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출을 단지 개인의 탐욕이나 윤리의식 부재로 이해하면, 교육이나 전문직 직업 의식 제고라는 개인적 해결 방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와 비교해 자본제적 의료체제라는 시각에서는, 의사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의 동력과 그 메커니즘에 개입하고 이를 반-자본주의적으로 재조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환원주의적으로 습관처럼 체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체제와 현실적 실천을 정렬(align)하기 위해서도, 즉 현실의 실천이 체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총체적 체제 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때문에, 나는 현재의 체제적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를 더 늘리는 것, 공공병원을 더 만드는 것,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거나 지역의료의 불평등을 결정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건강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자본주의 발전은 적어도 초기에는 사회적 진보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한 후 보건의료 자원과 서비스 역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지리적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의료 이용이 함께 증가했다. 과학 지식과 기술 도입이 빨라지면서 보건의료가 질적으로 향상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의료보험과 보건의료 확대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괄목할 만한 건강 수준 향상은 자본주의의 진보적 역할을 뚜렷하게 보이는 대표적 지표다.

문제는 자본주의 의료체제가 고도화하면서 모순이 발생하고 격화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권력이 관심을 기울이는 의료비 지출 급증, 그리고 자원 배치의 불균형과 불평등이 모두 자본주의체제 고도화에 따른 모순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전공의와 간호사 인력의 장시간 노동과 소진에 이르는 노동 강도는 자본주의적 노동체제의 모순이 빚어내는 필연적 현상이다. 지역 불평등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필연적 모순이다.

‘사람 중심 관점’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내세운 공적 재정이 의료 시장에서의 의료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모든 계급의 소비자 정체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의료 시장을 어느 정도 통제함과 아울러 노동자와 농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계론적 의미에서 의료와 돌봄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소비자 정체성을 형성, 강화했다. 클루스카르(Michel Clouscard)의 개념으로는 ‘유혹하는 자본주의(Le capitalisme de la séduction)’의 한 구성 요소로서 국민건강보험이 ‘개인화된 대중(masse individualisée)’을 생산하는 데 이바지한 것이다.

모순이 심해지면서 곧 드러나겠지만, 자본과 경제권력의 운동은 당분간 더 강해져 위기로 이어

질 공산이 크다. 국가권력은 경제권력의 이해를 대변할 뿐 아니라 통치 관점에서도 경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 시장적 보건의료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더 큰 경제적 유인 동기를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 실천 방법이다. 더 많은 의료 소비를 원하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도 경제권력과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권력이 강화하면서 국가와의 권력관계를 역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제 발전과 성장 이데올로기가 통치에 동원되는 한, 자본과 경제권력은 통제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국가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의 모순은 일차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둘러싸고 표출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국가권력은 총자본의 이익을 위해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하면서, 의료비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의료급여 재정 증가를 억제하려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시장의 확대는 한편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재정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실손보험과 돌봄의 금융화를 중심으로 한 민간보험 자본의 이해관계도 공적 재정 지출을 줄이는 쪽에 부합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진보성도 있다고 했지만, 사람 중심 관점에 부합하는 경제권력의 개혁 경로는 국가권력 또는 사회권력의 개입과 통제에 좌우된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권력관계, 그리고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의 관계로 볼 때, 경제권력 또는 자본의 진보성을 키우면서 모순은 해소하는 전략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며 실행 가능성도 의심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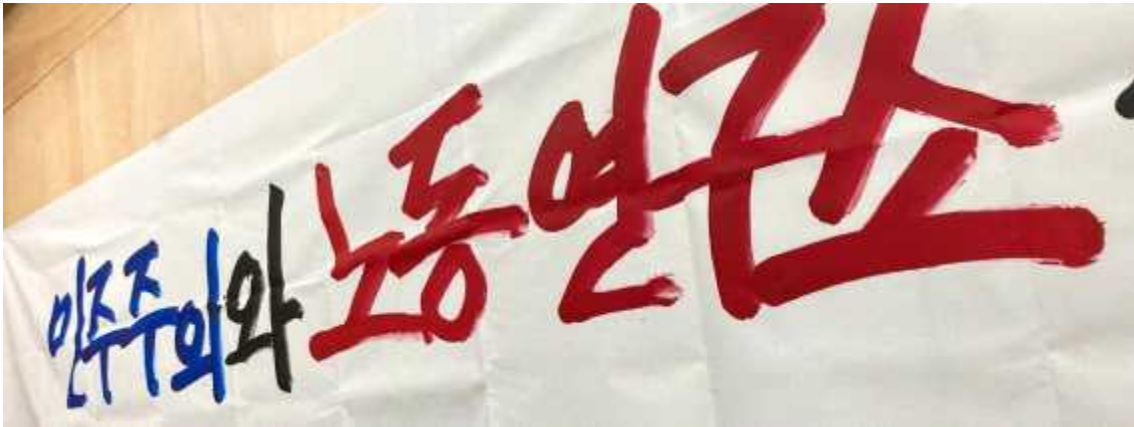
예를 들어, 에릭 올린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에서 진보적 개혁의 방법으로 ‘자본주의적 국가주의 경제 규제’, ‘사회적 자본주의’, ‘협동조합적 시장경제’, ‘사회적 시장경제’ 등을 제시하는데, 그 자신이 설명하듯이 이러한 전략은 “광범위하고 튼튼한 경제 민주주의의 성취” 위에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권력이 시민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력 강화를 통해 조직되어, 경제에 대해 직간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트의 전략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권력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국가권력에 대해 그리고 사회권력 자체의 민주적 권력 강화 없이 ‘경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는 어렵다. 한국 상황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의 민주적 역량과 권력 강화를 통하는 경로만이 경제권력의 개혁 또는 변혁을 보증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한국적 현실에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운동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다른 권력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경제권력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의 논리와 원리를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에서 자본주의체제의 진보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 축적 동기와 결합한 신약이나 신기술은 시민과 환자, 인구 집단의 건강을 향상하고 고통을 줄이는 데 이바지한다. 원격의료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고립 지역 거주 노인의 돌봄에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제 내 개혁에 한정해도 그 가능성은 경제권력의 내적 논리보다는 외부적으로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의 개입과 통제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현대적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핵심인 새로운 기술

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는지가 중요하다. 경제적 부담이나 불평등과 같은 모순을 해소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다.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이 자본 축적 메커니즘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결합하면, 그만큼 자본주의적 경제권력의 모순은 더 빨리 격화하고 또한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는 민주주의와 노동이라는 주제를 정치경제학비판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홈페이지와 웹진 <전망과 실천>은 깊이있는 사회적 계급적 시각으로 분석한 글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홈페이지: <http://dem-labor.org>

구독신청: http://dem-labor.org/?page_id=6848

후원: <https://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 ◀ 웹진 [전망과 실천] 구독 신청
QR로 바로 신청하기



-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후원
QR로 바로 신청하기